

기획연구 2010-08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과제

홍석하 · 성태규

발 간 사

마침내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되었고 출범시기는 2012년 7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되었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이전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현재의 위헌판결로 그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세종시는 단일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종시건설은 중앙공공행정기관의 이전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아직 추진이 미흡합니다마는 기업도시건설과 함께 추진되는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지역개발전략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건설은 충남지역만이 잘 살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없고, 이를 계기로 각 지역은 지역고유의 특수성과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오랜 산고의 결과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위헌소송과 수정안을 둘러싼 국론의 분열속에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결과는 우리 충청인이 단합된 목소리로 건설의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설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민~연~학 등 지역 각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세종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천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해 주신 홍석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수정안이 폐기된 이후 행안부장관에 의해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가 8월20일 이행되었고 마침내 12월 9일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외견상 건설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여전히 세종시 건설이 정치권의 쟁점이 될 여지가 있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에서는 민·관·정 거버넌스 체계로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단순 의결조율에도 한계가 있고 실제 세종시설치법과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충청권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의보다는 지역의 요구에 매몰된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충청권공대위 소속 단위가 행정도시의 본래 위상과 목표 달성보다는 소 지역의 요구에 집중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현 단계 정상건설을 위협하는 주·객관적인 문제와 이를 실제적인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하여 충청권공대위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특히, 세종시설치법이 원안과 다르게 관할구역이 확대되었고 확대된 구역에 대한 예산 등 대책이 전무한 상황을 포함하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해당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II. 수정안 이후 원안 정상추진 현황

행정도시 원안이란 세종시설치법을 제정하여 연기·공주·청원 지역에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여,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서 장차 50만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안 이후 법적, 제도적 이행에 따라 정상건설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주택분양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반응으로 더 이상의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의구심과 정권주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변환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수정안 이후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해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원안 추진을 위한 과제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계획대로 이전, 둘째 원안에 충실한 적정 예산 및 사업비 집행, 셋째 도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준비, 넷째 민간 부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100조 투입 도시 건설 완료 등이다. 이와 관련된 주체기관 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정부는 총리실 및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고시를 완료하고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세종시지원위원회 구성 및 행안부 산하 출범지원단을 통해 정상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이전은 1단계가 2012년 말 입주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 1단계 이전을 완료하기 때문에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새해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출연연구기관들의 설계비 195억 전액이 삭감되는 등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중 기존 청사 매각이나 세종시에 부지 매입을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발표가 있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2011년 예산이 7,859억으로 확정됨에 따라 2년 이상 지연된 공기를 보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행정과 기업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강한 의지표명을 바라고 있다.

총리실과 행안부에서는 각기 세종시 출범과 조기 정착화를 위하여 지원위원회와 출범지원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초기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노력은 지대하다. 다만 정당에 따라 노력과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안에 따라 소지역이기주의를 재연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안 지연 시에도 특히 당시 광역단체장들은 언론의 눈치만 보면서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아 수정안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세종시가 향후 충청권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매년 70% 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장하는 추진엔진이 되도록 지키려면 특히 대전·충남·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정부가 구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출범준비단 참여를 통해 편입 지자체의 공동화 방지 대책을 건의, 마련하고 정상건설을 지원, 촉구해야 한다.

3) 민간단체

민간단체는 수정안 저지와 원안 추진의 동력으로 사실상 세종시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별 민간단체 활동은 파급력이나 위상에서 500만 충청권을 포괄해내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민간단체는 향후 세종시 정상추진과 관련 건설과정의 쟁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문가 조직과 함께 대비해야 한다.

과정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 교수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다양한 관련의제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면 전국민적 공감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I. 결론

1) 세종시시설법 제정 이후 예상 쟁점과 문제점의 해소

첫째,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충남북도지사 참여를 통해 공주시와 청원군의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되는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출범시기 조기화로 인해 지방공공시설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 대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과 지방공공시설이 출범 이후까지 공사를 지속할 경우 정부의 국비지원을 약속받아야 한다.

셋째, 연기군 잔여지역이 관할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조치원읍을 포함 잔여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빠른 시일내 제기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 받아야 한다.

결국 시설법 제정 이후 원안 건설과 다르게 확대된 관리구역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와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2) 행정도시 정상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감시체계 구축

첫째, 2006년 정부에서 작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분석을 통한 대응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행복도시 건설청의 MPAS(행정도시 사업관리 시스템)의 사업비 집행실적, 인력, 장비 운용 문제점 등 자료 확보를 통한 감시 시스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건설청 및 LH의 사업 추진 업무보고 시 내용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요구해야 한다. 아직은 예정 및 주변지역이 충남 및 충북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BTL방식의 학교건설 등 예상문제를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할 경우 충청권 스스로 도시의 위상과 목표를 축소시킬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주체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수립

지자체-정치권-시민단체-주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각 단위별로 제출되는 정상추진의 과제 및 자료를 충청권공대위 내 ‘세종시포럼-전문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정상추진 감시 및 지원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선 지원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의회와 협의 하에 시도별 세종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사업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설치법률안 이후 제정될 설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정치권 특히 야당은 세종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30년 안정 건설을 위하여 정치권 전반이 합의하는 안정건설 협약식을 전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주민단체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속에 특정 정당에 경도되는 편향을 보이고 대의보다는 자치단체 이익에 몰두하여 지역역량의 결집에 난관을 조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상건설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 시민단체는 조직운영 및 사업집행보다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제고하여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야 하며 선출직에 대한 압박을 통해 바른 정책 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주체의 고유한 역할의 바른 수행과 단일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상

시 연대는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담보하는 핵심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V. 정책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시 건설은 지금도 대단히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어 이를 정방향으로 인도할 역할이 지역에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는 책임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시기별로 세부적인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여 충청권의 공동행동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내용과 과제가 특히 충청남도의 당면과제로 정책화하여 충청권의 공동사업으로 확대하고 충남의 주도성 속에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 례

제 1 장 행정도시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1
2. 행정도시 건설 주체간의 역할	5
3. 행정도시 건설의 공무원 자세	7
4. 행정도시 원안 건설이 충청권에 좋은 이유	8
5.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분석	10
6. 행정도시 건설 추진과정에 대한 충청권의 반성	17
7. 현안업무 추진시 고려사항	18

제 2 장 세종시설치법

1. 세종시설치법 조기제정 필요성	19
2.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장·단점	20
3. 자치단체 지위	21
4. 자치권	22
5. 출범시기	22
6.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10.11)	23
7. 세종시설치법 충청권합의안은 설치법수정안	39
8. 세종시설치법 원안이 좋은 이유	40
9. 세종시설치법 제정 경과와 과제	41
10. 제정된 세종시설치법 주요내용	45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최종안	51

제 3 장 행정도시 건설 쟁점사항

1.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59
2. 행정도시 건설 축소·지연	60
3. 사업계획 및 집행	61
4. 행정도시 중기재정계획	62
5. 당면 현안	62
6. 애로사항	63
7. 향후 과제	63
8. 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개발계획 중심)	64
9. 부진공사 보완대책 수립	68

제 4 장 참고자료

1.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한 연기주민 투고	73
2.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	89
3. 행정도시 건설이 인근 도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102

표 차례

<표 1> 이전 예정 중앙행정 기관	1
<표 2> 재정지출 정부부담분 총 8.5조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단위:조원)	3
<표 3> 사업비지출 사업시행자 부담분(토지공사)	3
<표 4> 행정도시 예정지역 수용지	4
<표 5> 대안별 도입기능에 따른 고용인구	13
<표 6>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에 따른 장단점 비교 1	20
<표 7>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에 따른 장단점 비교 2	20
<표 8>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도시의 위상	27
<표 9>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종류	28
<표 10> 폐치분합 절차 관련 법규정	29
<표 11> 폐치분합 절차 비교	29
<표 12> 각 지역 및 단체 쟁점사항 비교	38
<표 13> 국회상정 세종시 설치법안별 내용비교	41
<표 14>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42
<표 15> 행정도시 건설 예정비용	60
<표 16> 행정도시 중기재정집행계획	62
<표 17> 행정도시 토지공급 추진계획	67
<표 18> 주민복합커뮤니티 규모산정	69
<표 19>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입장 비교	74
<표 20> 세종시청사 건립사업 추진개요	82

그림 차례

<그림 1> 행복도시 전경	2
<그림 2> 시청사조감도	68
<그림 3>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투시도	70

제 1 장 행정도시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세종시설치법을 제정하여 연기·공주·청원 지역에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여,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서 장차 50만 도시를 건설하는 것

1) 행정도시 도시개발 규모

(1)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

(2) 2012~14년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35개 내외의 중앙행정기관(1만명)을 단계별로 이전할 계획

(3) 행정기관 이외에 16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기능 등을 유치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이전)

(4) 도시의 원활한 기능발휘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청사 등 지방공공시설 375개 건설 (시청사·경찰서·소방서 등 공공청사,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표 1〉 이전 예정 중앙행정 기관

이전 예정 중앙행정 기관	
9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2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2) 행정도시 건설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2007년까지 완료하고 2030년까지 중앙행정·대학·의료·첨단산업 기능 등을 갖춘 인구 50만의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

(1) 초기활력단계(2007 ~ 2015) : 인구 15만인 유입

실시계획 수립('07.6), 첫마을·중심행정타운·대중교통축 등 사업 착공('07.7), 행정도시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07.12 현재까지 통과 지연)

정부청사 착공('08.10),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0.6)

정부청사 1단계 입주('12.7), 2단계 입주('13.7), 3단계 입주('14.7)

오송역 연결도로('11.12) 등 '15년까지 5개 광역도로 개설

(2) 자족적 성숙단계(2016 ~ 2020) : 목표인구 30만인

도시성장에 필수적인 자족기능(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산업 등)의 본격 운용
공주시 연결도로 등 2개 광역도로 개설('17.12), 청소년 수련시설 등 복지·체육시설 건설 확대

(3) 도시 완성단계(2021 ~ 2030) : 목표인구 50만인

주거지를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여 도시의 전체적인 골격 완성

청원 IC 연결도로 등 5개 광역도로 개설, 종합운동장 건설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완비



<그림 1> 행복도시 전경

〈표 2〉 재정지출 정부부담분 총 8.5조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단위:조원)

구 분		1단계 2007 ~ 15	2단계 2016 ~ 20	3단계 2021 ~ 30	합 계
정 부 부 담	● 광역교통기반시설, 특수시설				
	- 도로 등	1.35	1.35	-	2.70
	- 특수시설(방호시설 등)	0.45	-	-	0.45
	소 계	1.80	1.35	-	3.15
	● 공공건축				
	- 중앙행정시설	1.20	-	-	1.20
	- 지방행정/공공복지문화교육시설	1.69	0.28	0.52	2.49
	- 기타시설	0.22	-	-	0.22
	소 계	3.11	0.28	0.52	3.91
	● 용지비				
	- 중앙행정 용지	0.40	-	-	0.40
	- 공공용지	0.72	0.12	0.20	1.04
소 계	1.12	0.12	0.20	1.44	
정부부담 사업비용 합계		6.03	1.75	0.72	8.50

〈표 3〉 사업비지출 사업시행자 부담분(토지공사)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사 업 시 행 자	● 도시기반조성	10.99	1.69	1.32	14.00
	- 용지보상(개발단계 이전소요)	4.84	0.11	0.06	5.01
	-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6.15	1.58	1.26	8.99
사업시행자부담 사업비용		10.99	1.69	1.32	14.00

3) 시간적 범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건설특별법')이 제정된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함

4) 공간적 범위

건설특별법 제12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2005-123('05.5.24)호로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로 지정된 연기군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의 72.91km²(2,210만평)를 대상지역으로 함

위치: 행정도시는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10km, 서울에서 약 120km 거리로 충청권의 중심지역에 위치, 예정지역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쪽으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있다. 청주공항에서 24km 거리

〈표 4〉 행정도시 예정지역 수용지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봉기리, 석교리, 석삼리 전지역, 대평리, 부용리, 성덕리, 신촌리, 영곡리, 용포리, 장재리, 호탄리, 황용리, 일부지역
	남 면	갈운리, 고정리, 나성리, 방축리, 송담리, 송원리, 양화리, 월산리, 종촌리, 진의리 전지역, 보통리, 연기리 일부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지역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 일부 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지역

면 적 : 총 297km² (예정지역 72.91km² +주변지역 223.77km²)

기 정 : 73,137,059m²(73.14km²)(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123호: '05.5.24)

변 경 : 72,908,221m²(72.91km²)(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418호: '06.10.13)

사 유 : 예정지역 경계 변경없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면적정정

예정지역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지역

주변지역 :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2. 행정도시 건설 주체간의 역할

행정도시는 인구 50만명 거주로 완성

1)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건설특별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주요 정책 심의(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관련법령의 제·개정

예정지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청사이전과 관련한 사항

이전공무원복지대책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교육문화복지시설의 설치

2) 행정도시건설청(특별법상 건설청장의 임무 제39조)

개발계획 수립 및 정부예산 집행(8.5조)-정부청사, 공공시설 등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의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예정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의 수립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에 의한 사무

위원회의 사무의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3)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14조)-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예정지역내 토지 매수

실시계획의 수립

토지 조성(원형지 개발자로 첫마을 사업 참여)

토지의 공급

4) 자치단체

도시운영을 위한 인허가 등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5) 민간부문

주택, 상가 등의 건축과 주민입주

3. 행정도시 건설의 공무원 자세

-공무원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

1) 공무원과 선출직 및 시민단체의 차이

공무원: 법령 제정, 개정 추진, 예산편성, 집행등

합법성을 근거로 문서를 만들고 집행(경제성, 효율성 등 검토)

선출직: 정책방향 제시 및 결정 등

시민단체: 비판 감시 등

2) 세종시설치법을 정상적으로 조기제정 필요성 인식

구역, 지위, 출범시기 등에 따라 각종 계획 유동적

3) 건설특별법과 세종시설치법 차이 구분

건설특별법은 도시건설

세종시설치법은 도시운영

4. 행정도시 원안 건설이 충청권에 좋은 이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의 비약적 발전

1) 중심 확보

정부(중앙) 정책 기획의 중심

인문 사회 등의 연구중심

※ 한국 두뇌 중심

교통 중심: 전국 2시간 생활권

2) 인구 증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의 비약적 발전

3) 파급효과

광역 연계형의 발전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면서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의정부 등이 연계형태로 발전된 현재의 수도권과 비슷

산업구조의 변화

농업부분에서는 도시형 농업 및 상업적 농업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업은 고부가가치형 첨단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상업은 소비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개별 상업주체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며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행정도시의 회의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업, 그리고 행정도시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여가 및 유흥서비스업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 주변 농촌지역은 1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신규산업이 창출되고 그로 인한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대전은 행정도시의 배후도시로 교육, 문화, 오락, 주거기능을 지원
청주는 바이오제품과 항공산업 기능이 강화
천안은 반도체, 영상, 정보통신산업 성장이 가속화
공주는 문화, 휴양도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는 위성도시 기능을 수행
논산, 예산 등은 광대한 농경지 보유 농산물을 비롯한 1차 산업 상품 유통시장이 형성

교육부문의 질적·양적 개선

충청권에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각종 교육기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자녀교육을 위해 현재의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학이 새로이 입지하고 주변지역에 입지한 대학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은 충청권의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외부지역으로부터 우수한 학생의 유치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5.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분석

세종시 발전방안 및 보충자료의 문제점 (2010. 1. 11)

1) 자족용지 부족 (6쪽)

인구 50만 도시를 위한 자족용지 부족

(1) 계획대로 중앙부처가 오면 자족용지가 부족하지 않음

(2) 행정도시는 자족기능이 너무 강해서 법적으로 주변지역을 지정했고, 토지이용계획은 저밀도 도시계획(68인/ha) 수립

※ 일산 175/ha, 분당 199/ha, 평촌 329/ha

(3) 1차 시범생활권 15,000세대 공동주택 용지 분양과 2차 시범생활권 조성의 치열한 경쟁률은 시장의 판단으로는 자족기능 충분하다는 증거

※ 자족용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자족기능은 넘쳐 50만 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자족용지 확대 반대

2) 인센티브 미비 (6쪽)

인센티브 미비 등 결정적인 문제점 내포

(1) 정부청사를 이전하고, 정부예산 8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

(2) 도시를 건설하면서 인센티브는 계속 개발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인센티브도 완벽한 것이 아님

※ 수정안에 제시된 지방공공시설의 자치단체 무상양여나, 사립학교 설립에 50년 무상임대는 좋은 방안으로, 건설과정에서 발굴하게 되어 있음

① 또 그렇게 하라고 차관급 청장과 15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임

② 지난 정부에서도 그래서 몇 차례 걸친 법 개정을 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2차에 걸친 법 개정을 했음 (법대로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험박이고 그러면 정부와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음)

※ 현 수정안(2010. 1. 11.)의 인센티브도 대부분 건설청의 인천 세계도시축전 행사(2009. 8.

7.~10. 25.) 홍보물(행복도시 세종)에서 언급된 것임

3) 구체적인 안은 없다 (6쪽)

당시 계획수립에 참여한 000교수 발언('09. 11. 25.)

(1) 정부예산 8조 5천억 원 및 토지공사 14조 원 투자와

(2)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구체적인 안임

※ 지금까지 이보다 더 좋은 안은 없었으며, 전임 청장과 계획에 참여한 건설청 및 토공직원과 학자들이 알면 서운해 할 것임

4) 국정비효율에 따른 비용 추산 (8쪽)

국정비효율 문제로 연간 3~5조원 비용 발생(한국행정연구원, 행정학회)

연구원이나 학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타당한 자료가 있다면 정부가 판단하고 나서서 정부명의로 발표를 해야 함

5) 화상회의 (9쪽)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후 無用之物화

'03.3~'09.9월까지 1.7%(국무회의3/367, 차관회의 9/343회)

정부 의지 문제, 자치단체는 활성화 (충남 화상회의 실적, 2010. 3. 8 충남일보)

6) 과천 인구 감소 (11쪽)

행정중심도시(과천, 춘천)는 성장이 미미한 수준

과천은 중앙행정기관 입주 마감 '80년대 후반 이후 인구감소추세인 반면

('90년 7.2만→05년 5.7만)

과천은 도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더 이상 외부기관이나 기업입주 등 곤란

그럼에도 과천으로 서로 이사를 가려고 해서 주택가격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

7) 기성도시의 공동화 (11쪽)

일자리 없이 좋은 환경 환경의 아파트만 공급할 경우 인근 대전·청주·공주·조치원 등 기성 도시의 공동화 우려

(1) 행정도시가 되면 인근 도시는 동반 성장 할 것임.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주변지역을 고 시한 것임

(2) 또한 공동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도 연기군·공주시·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충청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증평군 전역을 포함한 3,598km²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6. 1. 2. 지정·고시)을 2007년도에 수립

(3) 그러면 충청도는 대덕의 이공계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행정도시의 인문사회계열 연구 소까지 합치면 한국 최고의 두뇌가 모두 충청도로 모여 인근지역과 동반성장

8) 자족성 확보방안 미반영 (12쪽)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 계획·제도에는 미반영

(1)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기업 입주는 원안은 2단계인 2016년부터 임으로, 2012년경부터 계획·제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적정

(2) 너무 일찍 검토하여 제도화 해놓으면, 관련 규정(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막상 반영 할 때는 혼란만 야기

※ 월산공단도 2012년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6-1생활권(월산공단 지역)도 2012년 12 월에 생활권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음

9) 도시조성을 10년 단축 (13쪽)

도시조성을 2030→2020년으로 10년간 단축

생활권별 공사 착공계획(한국토지공사 2009 백서 174쪽)을 보면 금년까지 22권역 중 15권

역을 착공하고 나머지도 2018년까지 전부 착공하게 되어 있어, 50만 목표 인구를 채우는 것은 2030년 이지만. 도시조성은 현재의 계획으로도 사실상 2020년경에는 대부분 끝나게 되어 있음 (통상 착공 후 3-4년 소요)

※ LH공사 계획도 2015년까지 부지조성, 기반시설에 68.4%(6.15조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음 (전체공사비로는 2015년까지 78.5%인 10.99조)

10) 도시 내 주요 인프라 15년 단축 (13쪽)

도시 내 주요 인프라도 2030→2015년으로 15년간 단축

대중교통중심도로·장대교량·공동구의 도시 내 인프라는 2013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백서)

※ '09. 12. 말까지 부지조성, 기반시설에는 6.8%인 0.61조원이 집행되었으나, '15년까지는 지금의 10배인 68.4%(6.15조원)의 투자 계획으로 계획대로 하면 됨

11) 대안별 도입기능에 따른 고용인구 (19쪽, 60쪽)

(예를 들면)

상업업무는 면적은 139% 증가함에도 고용은 283% 증가

주거용지는 면적은 34% 감소함에도 고용은 295% 증가

공공시설은 면적은 22% 감소함에도 고용은 317% 증가

상업업무는 면적증가율보다는 고용증가율이 적어야 하며 주거 및 공공시설은 면적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은 비슷해야 함

〈표 5〉 대안별 도입기능에 따른 고용인구

대안별 도입기능	원안			발전방안		
	면적(만㎡)	비율(%)	고용(명)	면적(만㎡)	비율(%)	고용(명)
상업업무	148	2.0	42,200	206	2.8	119,700
주거용지	1,533	21.0	8,000	1,008	13.8	23,600
공공시설 (도로, 학교 등)	1,413	19.4	4,600	1,100	15.1	14,600

※ 예 : 도시인구(50만명) 중 예정지역 인구가 10만명 줄었음에도, 상업업무면적이 늘어나면 단위 면적당 장사는 잘 알 될 것이므로 고용도 장사에 어느 정도 비례할 것임 지나치게 고용 인구를 부풀렸음

12) 도시교통계획 (11쪽, 41쪽)

중심순환도로('15→'13년까지 2년 단축) :

※ 서측(9.7km) '11년, 동측(13.2km) '13년까지 구축

토공 2008백서(2009년 8월 발행) 233쪽에도 이미 나와 있음

13) 16개 국책연구기관 (23쪽)

KDI,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여 연구 지원기능 수행
행정부이전은 비효율이라 하면서, 각 부처 업무를 연구 지원하는 연구기관만 이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행정 비효율보다 연구원 비효율이 더 클 것임)

14) SSF(오스트리아)투자 (30, 57, 58쪽)

현재까지 투자 확정 기업 : SSF(오스트리아, 16.5만㎡, 1.2억불)

삼성, 한화, 웅진 인터뷰(대전일보서 3. 11, 3. 22, 4. 2.에 시리즈 보도)

일부 국회의원 및 언론은 SSF사를 유령으로 보고 있어 SSF사도 인터뷰 필요

15) 무리한 수정안? (41쪽)

세종시 도시·광역교통망 구축시기 조정(안)

외곽고속순환도로 신설 ['17년 이후(기존, 원안) ⇒'2015년(수정)]

전반적인 교통수요를 추정하면 기존(원안)이 타당

16) 행복아파트 조기건설 (44쪽)

입주 시기도 '12년 말에서 '11년 말로 1년 단축
건설청 2007, 2008백서를 보면 2011년 말 입주로 되어 있음

17) 주민생계조합 위탁사업 확대 (45쪽)

주민생계조합을 통한 위탁사업 확대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을 통한 소득창출 사업 위탁 시행중

※ 주민 생계조합 : 원주민의 74%인 2,794세대 가입

- 일일평균 180명 주민고용, 수익금은 조합원에 배당('09.3 700%)
- 「행정도시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가능 사업을 고시

LH·건설청 등은 기존의 지장물 철거, 무연분묘이장, 수목이식 등 외에 시설관리 등 추가 업무를 적극 발굴·추진

그러나 사실은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대책위”를 인정하는 분위기 (대전일보 2. 24, 3. 1.) 이로 인해 주민생계조합 일자리 고갈

※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벌써부터 먼저 지키지 않으려는 분위기

18) 경제적 편익 측면 (62쪽)

전체효과(KDI, 행정연구원) : 발전방안은 행정비효율을 예방하는 한편, 연구·교육기능 유치 등에 따른 편익이 평균 10배 큼

지역발전 효과(국토연구원) :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충청권에 대해 지역발전 효과도 발전방안이 원안에 비해 약 3배에 달함

- (1)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2) 부동산시장(입주권, 공시지가 등)의 반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지 ?
- (3) 한국토지주택공사 첫마을 분양지연, 우리나라 12개 최고 건설업체가 시범생활권의 공동

주택건설용지대금 미납 및 분양지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지 ?

19) 원형지 공급 (세종시 발전방안 Q&A)

원형지 공급가격 책정기준(6쪽)

원형지 공급가격(40만원)은 2007 토지공사 백서287쪽에 대한 해명 필요

또한,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2007. 6. 20일 제정)에 따른 토지공사의 “행정 도시의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07. 6. 21 제정)으로 적용하여 매각한 토지와 형평성 문제 (특히 이주자 택지) 해소 방안

※ 세종시 발전방안 Q&A의 5쪽의 3개 그림은 2007 토지공사 백서 287쪽 그림 2개를 그대로 옮긴 것임

20) LH공사 적자는 어떻게 메우나 (세종시 발전방안 Q&A)

토지 저가 공급 시 LH공사 적자는 어떻게 메우나(7쪽)

①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하여 땅을 팔고 ②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③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도시조기 활성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

(1) 기업용지를 싸게 팔고 주택용지를 다음에 판다면 한국토지공사 2009백서 174쪽의 생활권 공사를 지연시킬 가능성 높으며, 주택용지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초기 민간 자본 유입 지연

(2) 상업용지를 나중에 팔면(너무 비싸면 팔리지도 않을 것임) 도시 활성화 지연

(3) 예정지역 인구는 50만에서 40만으로 줄이면서 상업용지는 2%(148km)에서 2.8%(206km)로 늘림(상업용지 남발)에 따라 당초보다 저가 매각 예상됨

※ 2007 백서 267쪽 “토지이용계획도 및 공급체계”에 대한 해명 필요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한 토공직원은 문책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루 이자만도 76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할 입장임)

6. 행정도시 건설 추진과정에 대한 충청권의 반성

최근의 행정도시 건설 혼란에 일정부분 지역 책임

1) 지역역량 결집미흡

세종시설치법 제정 필요⇒지역분란 및 반대로 일관한 국회의원, 도지사 책임

※ 시청사 등 지방공공시설 3년 이상 건설 지연

중앙행정기관 변경고시 필요할 때 일부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요구

수정안 부결 후 자치단체 이해관계로 지역의사 결집 또 지연

형식적인 관심만 있을 뿐이며 적극적인 참여 부족

야당 간의 단합보다는 정책 선점을 위한 이전투구, 일부 언론 부추김

2) 충청권 주민여론 수렴 미흡

주민입장 보다는 자치단체(기득권 층)이익 몰두

3) 행정도시 건설 반대세력 간과

정부에서 행정도시 백지화 추진

7. 현안업무 추진시 고려사항

정상건설 목적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

1) 건설청장의 자치단체 출범 등 관련 업무 추진

자치단체 출범준비 및 도시계획시설 특례사무 진행

2) 행정도시 정상건설 공동목표 인식

건설청과 충청권자치단체는 행정도시 정상건설의 공동목표 설정
세종시설치법 제정, 첫마을 주민입주, 자치단체 출범 등

3) 정상적인 행정도시 건설이 가능하게 적극 협조

도시건설 지연 ⇒ 공사비 증가 ⇒ 도시활성화 지연(악순환)

※ 지연요인 : 세종시설치법, 정부예산, LH사업비, 분양지연 등

4) 한마음 한 뜻으로 또 다른 지연, 축소 빌미 주지 말아야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

제 2 장 세종시설치법

1. 세종시설치법 조기제정 필요성

세종시설치법 제정은 행정도시 정상건설의 시작

1) 행정도시 건설계획 조기 확정

입법취지에 맞는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확정

2) 공공시설 건설의 법적 뒷받침

지방공공시설: 시청사, 의회, 보건소, 지도소, 교육청 등
시단위 국가기관: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3) 정상적인 예산확보 및 도시 조기 활성화

중앙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시설 설치 근거

4) 행정도시 정상건설의 의미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와 함께 행정도시 정상건설의 중요 요소

2.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장·단점

1) 주민

거주지역 및 장·단기적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짐

조치원 : 단기 유리, 중·장기 불리, 예정·주변 : 불리

〈표 6〉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에 따른 장단점 비교 1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청 등 공동이용에 따른 공동체 유지 ○ 예산절감 및 공무원 증원 억제 ○ 세종도시 면적 확대 ○ 초기에 많은 도시 인구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축소·지연 및 도시활성화 지연 ○ 일자리 창출 지연 및 갈등 상존 ○ 예산축소 및 재산가치 상승 저조 ○ 유명도시가 될 경우 지역 책임 가중

2) 공무원 등 이익 집단

단체 성격, 근무지 및 직종 등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짐

00단체 : 유리, 사업소 및 기술직 공무원 : 불리

〈표 7〉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에 따른 장단점 비교 2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사항 성취로 안정감 ○ 연기군 재정의 지속성 확보 ○ 행정도시 지속·발전의 주체 ○ 지방공공시설 미설치로 예산절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확보대책 수립·추진 ○ 원안 축소·지연 대책 수립·추진 ○ 과학·산업 활성화 대책(3.5조) 수립·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연 및 승진지연

3. 자치단체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2종류로 구분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1)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법

광역자치단체를 희망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불완전한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인사·조직·재정 등에 혼란 우려

※ 불완전한 광역단체를 기초자치단체로 판단해도 문제

2) 적은 인구에 따른 공공시설건설·운영

법원 등 헌법기관 등은 개별법령으로 해결

공무원 교육원, 학군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

3) 법은 집행을 위한 최상위 계획

단계별 광역추진 법령 제정 무리

4. 자치권

자치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축소는 엄격한 기준

1) 사무범위 제한

구체적 사실 없는 사무제한 입법은 부당

2) 위원회 설치

자치권을 제한할 정도의 위원회라면 업무가 명백해야 함

“세종시 발전방안”은 자치권의 기본

과거에는 행정도시 수정안을 발전방안으로 표시

3)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

제주특별자치도 : 자치권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 그동안 자치권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음

5. 출범시기

1)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2012~2013년 가능(연기군에서 희망하는 시기)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 지도소 등의 공공시설 건립 불필요

경찰서,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공시설도 불필요

※ 출범준비에 최소한의 시간 필요

6.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10.11)

1) 충청권 시도지사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공동노력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 공동선언문] (2010. 06. 08)

6.2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국민적 관심과 청년층의 대거 참여로 이명박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를 통한 지방축이기, 생명의 강 4대강 죽이기, 지방재정 고갈을 초래한 부자감세, 진정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반대 등 잘못된 정책을 심판한 투표민란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권이 국토와 국가균형발전을 거부하고 수도권규제의 일방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정책과 행정도시백지화 정책은 충청권은 물론 2,500만 지방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6.2지방선거 결과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제주는 물론 서울, 경기의 기초단체장을 판결이하하면서 지방살리기를 거부한 정권의 지방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방공동정부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고통 속에서 결정한 선택은 정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시급을 다투는 절박하고 무거운 책무로 우리는 이에 무한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먼저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공조와 협력을 통한 실천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4년간 행정도시와 밀접한 우리 충청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주민 이익은 생각 않고, 오직 자신의 인기관리만 집착하다가 행정도시를 이처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행정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우선 충청권이 먼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충청권 시도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행정도시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수정안 제기와 건설지연으로 충청권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지만 행정도시의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도시의 충청권의 힘만으로 건설될 수 없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도권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먼저 충청권 시도지사가 단결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도시 건설을 되돌릴 수 없는 든든한 기초위에 설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행정도시의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판결을 받았고 오랜 공론화와 2,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

해 만든 걸작으로 대선, 총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건설특별법으로 보장된 국책사업으로 예산도,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보와 정부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이명박대통령은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수정백지화 추진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정추진 국무총리 및 장관을 전원 해임하라.

-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건설청 직원을 복귀시켜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하고 당초 계획된 2010년 정부청사 및 시청사 발주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도시 건설관련 각종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원안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하는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행복도시 건설청을 통해 당초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수립하라.

- 정부의 수정안에 의해 행정도시에 참여를 약속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 충청권 시도지사는 이들 기업이 주변지역이나 인근 자치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충청권자치단체는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직할의 지위와 관할구역, 출범시기에 대해 충청권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청한다.

2) 충청권공대위를 통한 자자체 의견 수렴 및 단일화 경과

2010년 06.24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민·관·정공동대책기구 조속 추진 결의

07.13 민·관·정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대전

07.20 제2차 준비위원회 -충북

07.28 제3차 준비위원회 -충남

08.06 제4차 준비위원회 -대전

08.12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 출범식

08.26 공대위 상임집행위원회 1차회의

08.30 공대위 운영위원회 1차회의-충북

09.07 공대위 상임집행위원회 2차회의

09.17 공대위 설치법 소위원회 진행

09.24 공대위 상임집행위원회 3차회의

10.04 공대위 운영위원회 2차회의-충남

10.13 공대위 상임집행위원회 4차회의

10.29 공대위 상임집행위원회 5차회의

11.11 공대위 운영위원회 3차회의 및 설치법 끝장토론

3)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 합의사항 (2010. 11. 11)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 세종시설치법 관련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① (명칭) 명칭은 세종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

② (법적지위)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사무를 수행하며 온전하고 완벽한 광역 지자체 의미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개정하여 광역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특례)행정도시의 정상건설과 편입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특례지원을 해야 한다.

④ (출범시기)가급적 빨리 출범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청사 건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⑤ (관할구역)관할구역은 각 지자체가 충청권공대위에 제출한 입장 및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다.

⑥ 세종시설치법은 연내 제정되어야 한다.

⑦ 행정도시정상추진과 세종시설치법의 연내제정을 위한 정부여당 및 정치권의 의지와 역할을 촉구한다.

⑧ 충청권 각 주체들은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세종시설치법 연내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유관 지자체 의견서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청원군 입장

①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광역자치단체

② 사무범위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 설치
출범초기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능 수행

➡ 세종시특별법중 "세종시지원위원회와관련된 조항" 전부삭제

③ 관할구역(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관련)

지위, 사무가 충족할 경우 ➡ 주민의사를 존중한 「주민투표」로서 편입여부 결정
지위, 사무 미충족할 경우 ➡ 편입 반대

④ 시행시기 : 의견 없음

단, '11년 세종시 첫마을 입주, 세종시 설치에 따른 선거구 조정, 광역자치 단체 요건완비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세종시 관할구역은 『세종시 법적지위 및 사무범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광역자치단체 기능수행이라는 전제아래』 거론되어야 하며, 청원군 일부 지역(부용·강내면) 세종시 편입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함.

⑤ 검토내용

가. 법적지위에 대하여.....

법적지위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단층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와 유사

제주특별자치도 : 농촌중심형 도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 도시중심형 특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필요성

광역행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부합 및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표 8>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도시의 위상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조(목적) 이법은 수도권외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특별자치시(광역자치단체) 요건

별도의 기준이 없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

현행법상 합당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없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신설 위해 지방자치법 2조1항1호의 개정 필요

지방자치법 174조에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 근거규정이 명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필요
 (제174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 ………)

〈표 9〉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법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p> <p>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광역자치단체</p> <p>2. 시, 군, 구 ⇒ 기초자치단체</p> <p>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제174조(특례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p> <p>②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p>

나. 사무범위에 대하여.....

사무범위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 설치
- 출범초기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능 수행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수행

필요성

세종시특별법으로만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충남도에 광역사무에 대한 위탁을 할 경우 충남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전략 우려

다. 관할구역(의견수렴 방법)에 대하여.....

폐치분합의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 ②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

<표 10> 폐치분합 절차 관련 법규정

관 련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는 방법 -주민투표법 제8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는 방법

폐치분합절차의 비교

<표 11> 폐치분합 절차 비교

구 분	의 회 의 건	주 민 투 표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4조2항 ·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고려사항	소속정당 당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지역 · 투표시기
장 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조율 가능성을 통한 불확실성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견의 직접수렴 · 신속한 결과 · 민주적·법적 정당성 확보 ·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찬·반측 모두 수용
단 점	이견 조율의 어려움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지연 또는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이 불가능 · 여론조사 보다 과다 비용 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문제점

대부분 주민투표보다 여론조사가 실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조사기관이나 질문의 방향에 따라 조사결과가 상이

여론조사 결과상 나타난 찬·반을 떠나, 세종시 편입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의 타당성,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발생 및 지역주민 간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여론조사는 주민 의견 수렴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함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충청북도 입장

① 법적지위

완벽한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

세종시는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필요

② 자치권(사무범위)

완전한 광역자치단체기능 수행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온전하고 완전한 광역자치 단체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권 부여

③ 관할구역

세종시가 완벽한 의미의 광역자치단체일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편입여부 결정(편입예정 지역 11개리)

④ 출범시기

2012년 7월

행정구역이 2개도, 3개시군에 걸쳐 통합설치 되는 광역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장기간 소요 예상

세종시 첫마을 입주,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점 고려
첫마을 입주(11년 하반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12년말)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충청남도 입장

① 명칭

세종

② 법적지위

광역자치단체

충청도의 세종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세종시

③ 관할구역

【예정지역+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

지역주민과 정치권이 공감대 형성

④ 출범시기

가급적 조기(早期)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세종시가 정상건설 되어야 하며, 설치법 논쟁으로 정부에 건설지연 빌미를 주는 것은 반대 함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연기군 입장

①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광역자치단체)

② 관할구역

예정·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③ 사무범위

기초 및 광역자치사무

④ 출범시기

가급적 빠른 시일내

⑤ 주장 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연기군에서는 2009년도 2차례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법적지위 '정부직할특별자치시'와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기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적지위나 관할구역(연기군잔여지역 포함)에 대하여는 이미 행안위소위에서 합의 결정되었던 사항임.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시설치법률안에서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새로운 단층제 자치단체로 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사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사무중 수행이 곤란한 사무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조정 결정하는 사항이 세종시 설치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세종시 출범 준비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행정사각지대로 편입 3개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서 배제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복지행정 등 각종 지원 대책에서도 소외될 수 있음. 특히,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1개 기관이 입주하고 2013년에는 18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 완료 및 2012년 본격적인 첫마을 입주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능동적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 출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공주시 입장

① 법적지위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

지역개발, 3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 반영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② 출범시기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가급적 빠른 시행

③ 관할구역

대승적 국가균형발전 및 계류 중인 법률안의 지속성 유지 차원

예정+주변지역은 물론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세종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세 위축 및 재정적 손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과 공동화방지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 조문화 요구

예) ① 시세 위축 및 재정적 손실 부분에 대한 교부세 보전

② 국가산업단지 등의 조성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

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공주시 포함 조치

④ 세종시에 주변도시를 포함하는 광역개발 system 적용 등

④ 붙임자료: 세종시 편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관할구역의 8.2%, 전체인구의 5.3% 상실로 인한 시세위축

세입예산 추계규모 (2030년 기준) 2,170억원 재정 손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관할구역 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학협력단 2007. 6. 4)

단기적으로는 빨대효과 현상에 따라 공동(空洞)화 급속진행

도청환청,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등 대단위 국가사업에서 제외

광범위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도시 건설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개발 시너지 효과차단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대전시 입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과 같은 의견이며 금년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처리되기를 원함

①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② 관할구역

예정지역 + 주변지역 + 연기군 잔여지역

③ 출범시기

가급적 빠른시일내

(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관련 충청권비대위 입장

① 명칭

세종

② 법적지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광역자치단체

불완전한 광역자치단체가 될 경우 충남도 교육재정 부담 가중

학교 건설에 따른 BTL사업비만도 2조원 추정

※ 불완전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 (세종시설치법 정부입법 중요)

③ 구역

원안대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되면〉

1. 일부 공공시설 미설치로 행정도시 축소 명분
미설치가 예상되는 공공시설 : 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
2. 공간구조 및 도시주요기능 재배치로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 불가피, 정상건설 지연 명분
6대 생활권 중 도시행정기능을 과학·산업 등으로 변경
※ 과학비즈니스벨트법 통과, 세종시 입지선정, 3.5조원 예산확보 전제 필수
3. 연기군의 세종시 지방공공시설 건설재원 부족
예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원은 예정지역내의 최소한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정도
4. 몇 년 내 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행정도시 예정지 이전으로 갈등 및 조치원 활성화 지연
⇒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반대(연기군 존치)

④ 자치권 축소

반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범위를 제한하려면 구체적 사례가 있어야 함에도 사례를 제시 못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위원회 설치
뚜렷한 위원회 임무도 없고, 세종시 발전방안은 자치권의 기본

⑤ 재정특례

세종시 지방공공시설 건설비의 적정한 지원금액

※ 국가예산지출의 상한(8.5조)에서 지방 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제한됨

⑥ 출범시기

2014년

(8) 세종시설치법 제정 관련 전문가 의견서

국회토론회

일시: 2010년 11월8일 14:00~17:00 국회도서관 421호

참석: 80여명(양승조, 이상민, 홍재형, 심대평의원, 충청권공대위)

주최: 홍재형 · 양승조 · 이상민의원

주관: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

▶ 홍준현 중앙대 교수

수정안 제기는 원칙과 취지를 몰라 발생한 것

설치법 제정의 이유는 건설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건설특별법의 내용은 변함이 없음

건설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시설치법의 법·행정적 측면

(법적지위)

광역+기초형태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법의 목적을 볼 때 광역으로 가야한다. 교육자치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명 칭)

현재 세종시로 쓰면 기초단체를 나타냄, 고유명칭+법적지위 관련 명칭이 혼합,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자치시'를 새로운 광역단체의 종류로 등재해야 함

(관할구역)

도시계획 구역을 꼭 행정구역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주변지역이 최적, 잔여지역 편입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초래

(출범시기)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2012년이 바람직하지만, 결국 정치적 타협이 필요함

▶ 조명래 단국대 교수

▷세종시설치법의 도시계획적 측면

(관할구역) 예정+주변지역

행정도시의 자기 완결성을 강하게 갖춘 계획적 신도시로서 공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계획구역과 관할구역이 일치되어야 함

연기 잔여지역은 현실적인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나, 잔여지역 편입은 세종시의 성격과 기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연기 잔여지역 문제해결 방안으로 세종시는 국토거점의 행정도시로 육성하고, 잔여지역은 세종시와 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특화도시로 육성하는 방안 고려 필요

잔여지역 편입시 세종시와 연기 잔여지역을 이원화해 유지관리하는 방안 ⇒ 성남시의 사례를 볼 때 양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러한 갈등은 세종시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법적지위)

국가 직할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 한시적 자치단체 ⇒ 2030년 이후 보통자치단체로 전환

(출범시기)

세종시를 올바르게 건설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함

‘최대한 빠른 출범’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세종시의 올바른 건설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잊어서는 안됨

▶ 이명규 광주대 교수

(관할구역)

현재의 계획을 바꾸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정+주변지역이 바람직함

▶ 하혜수 경북대 교수

(법적지위)

지위는 광역자치단체 지위확보 필요함, 교육 자치권 확보 및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야 함

(관할구역)

예정+주변지역이 순리적임, 잔여지역 포함시 잔여지역에 대한 자치구 설치 요구 등 여러 문제 발생, 연기 잔여지역은 과소지역으로 묶어서 다른 과소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하면 됨, 잔여지역과의 통합 문제는 세종시설치법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출범시기)

2012년 출범하되 2014년까지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박사

(관할구역)

예정+주변+잔여지역이 바람직함, 논리보다 현실에 주목해야 하며 잔여지역 공동화 방지, 자족성 확보, 지역의 역사성 및 주민 정서를 고려할 때 필요함

(출범시기) 2012년까지는 출범해야 함

▶ 이경기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관할구역)

예정+주변이 바람직함, 잔여지역은 차후에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함(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입지 등), 청원지역 편입여부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함

〈표 12〉 각 지역 및 단체 쟁점사항 비교

구 분	법적지위	출범시기	관할구역	비 고
충 청 남 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가급적 조기	예정지역+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	광역사무
연 기 군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가급적 빠른시일내	예정지역+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 청원주민투표반대	단계적 광역사무 배분
공 주 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가급적 빠른시일내	예정지역+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	보전방안 법제화 요구
청 원 군	온전하고 완벽한 광역단체	광역단체요건 완비고려	주민여론수렴 실시	지원위 삭제
충 청 북 도	온전하고 완벽한 광역단체	2012년7월	주민여론수렴 필요	
대 전 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가급적 빠른시일내	예정지역+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	국회 법안심사소위 계류사항
민 주 당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2012. 1	청원군 주민의견 반영	출범시 100% 광역사무 부여
선 진 당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2011. 7	주민의사 존중 (연기)	단계적 광역사무 배분
국민중심당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2011. 7	청원군 편입반대 모순	단계적 광역사무 배분
충 청 권 비 대 위	지방자치법개정 광역 명문화	2014	예정+주변지역	행·재정특례 지원

7. 세종시 설치법 총청권합의안은 설치법수정안

각각의 수정안은 각각의 문제점 내포

1) 또 다른 지역갈등 발생

지난 4년간 경험으로 볼 때 뚜렷한 대안 부재

2) 원안 정상건설 주장 희석

수정안 부결을 통한 원안 확정 의미 축소

3) 논리의 일관성 부족

정부에게는 원안을 요구, 자신은 수정안 선택

※ 지역의 신뢰성 저하

4) 행정도시 건설 지연 축소

누더기 행정도시가 되어, 세계적인 모범도시는 고사하고 유명도시

8. 세종시설치법 원안이 좋은 이유

논란없이 실행을 담보할 더 좋은 계획 부재

1) 신뢰성 확보

몇가지 검증으로 또 다른 논쟁 종식

지역화합

선진국으로 가는 길

2) 많은 진척

2006년도부터 추진되어 옴

※ 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한 정상건설 지연, 축소, 명분 차단

3)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책임

누더기 도시 및 유령도시 방지

※ 지역요구로 세종시설치법이 수정되면 지역 책임 가중

9. 세종시 설치법 제정 경과와 과제

세종시 설치법안 국회심의 진행상황

1) 법안 내용 (4건)

〈표 13〉 국회상정 세종시 설치법안별 내용비교

구 분	노영민 의원안 (’08.6.3)	양승조 의원안 (’08.9.18)	심대평 의원안 (’08.9.19)	홍재형 의원안 (’09.10.19)
법률명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개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10개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58개 조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15개조문)
지 위	정부직할특별자치시	좌동	좌동	좌동
구 역	예정+주변지역	예정+주변지역	예정+주변+연기 잔여지역	좌동
시행일	2010.7.1	좌동	좌동	좌동
기 타	·충북 건설업체 행복도시건설사업 참여 허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의원정수,지역 선거구 특례 ·세종시세 신설	·세종시지원위원회 설치 ·인접지역공동화 방지 ·의원정수·선거구, 교육특례 ·충북 건설업체 행복도시건설사업 참여 허용	·9부2처2청 등 이전대상기관 명시

※ 노영민·양승조·심대평 의원이 법안 단일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연기 잔여지역 포함, 세종시 인접 광역자치단체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허용 등)에 합의 (’08.12.3)

2) 진행경위

[노영민·양승조·심대평 의원 발의안]

'08. 12. 4 : 법안 일괄 상정 후 법안소위 회부(행안위)

'09. 1. 8 : 법안심사 (행안위 법안소위 1차, 전체회의)

법안소위는 공청회 개최 의견이 제기되어 전체회의에 회부기로 결정, 전체회의는 공청회 개최기로 결정

'09. 2. 9 : 공청회 개최(행안위 전체회의, 진술인 6명)

진술인들은 입법 필요성에는 의견을 일치하였으나, 입법시기 및 세종시 지위·구역에는 의견상이

'09. 2. 10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2차)

세종시의 법적지위 (광역· 특례시), 청원지역 포함 · 주민투표 여부, 특례조항 포함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한 후, 2.23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기로 결정

'09. 2. 23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3차)

지위는 기초특례시, 관할구역은 연기 잔여지역 포함 결정

지위와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에 대한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정부의 특례안 마련 후, 4월 국회 다시 논의기로 결정

'09. 4. 3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4차)

행안부에 3개 법적지위(기초특례시, 광역시, 특수자치단체) 부여에 따른 개정 대상관계법률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제출을 요구하고 계속 논의 결정

<표 14>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세종시 지위	세종시 관할구역	기타 건의사항
충청남도 (3.20 의결)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법률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충청북도 (3.10 의결)	"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반대	청원지역 포함여부 주민투표 및 특례시 설치 시 제외 요구
연기군 (3.11 의결)	"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정부기관 이전 계획 변경 고시 즉시 이행 등
공주시 (3.17 의결)	"	예정+주변지역(연기군 잔여 지역 포함여부 미언급)	법률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청원군 (3.13 의결)	"	청원지역 제외(연기군 잔여 지역 포함여부 미언급)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 및 국회 차원의 현 지실사 및 주민의견 청취

'09. 4.16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5차)

세종시의 지위는 '자치권 행사에 있어 정부직할의 광역시 지위를 부여하되, 교육자치권은 종전과 같이' 함

세종시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과 청원지역을 포함

수석전문위원과 정부는 법률시안을 작성하여 4.21 소위에 보고하고, 소위는 이에 대해 심사토록 함

'09. 4. 21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6차)

세종시 지위는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과 청원지역을 포함

'09. 4. 22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7차)

세종시의 지위는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재확인

세종시의 사무범위에 대한 미합의로 결론 없이 산회

'09. 7. 2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8차)

세종시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위는 기초+광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

사무범위는 광역자치단체 기능 중에서 세종시가 수행하기 곤란한 4종을 법률안에 유연하게 명시

* ① 광역적계획 수립사무 ② 고도의 전문성 기술력 필요 사무

③ 광역차원의 통일적 조정 필요 사무 ④ 과도한 재정 수반 사무

시행시기는 행안위위원들이 행정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결정

세종시의 지위·관할구역에 대해 충청권 지방의회 의견을 최단기간내 수립하고 법률시안을 다음 소위에서 논의

'09. 7. 13~7.14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9·10차)

관할구역과 출범시기를 제외한 법률안 축조심의 완료

명칭(세종특별자치시), 지위(기초+광역 형태), 사무범위(기초사무, 광역사무 중 특성상 세종시장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결정)

청원지역 편입여부 및 출범시기에 대해서는 의견 다양

'09. 7. 15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11차)

청원지역 세종시 편입여부, 세종시 출범시기, 지방의원 정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미결정,
7.22일 회의 속개 결정

'09. 7. 22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12차)

한나라·선진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불참하에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여 통합·조정안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

'09. 9. 24 : 행안위 전체회의 개최

법안소위가 의결한 법률(대안)을 심의하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의결을 유보

[홍재형의원 법안 발의]

'09. 10.19 : 홍재형 의원 세종시 설치법안 제출

'09.7.22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세종시 설치법 대안'에 9부 2처 2청 등 35개 이전기관 명시

[노영민·양승조·심대평·홍재형 의원 발의안 통합심의]

'10. 6. 23 : 행안위 전체회의 개최

세종시 설치법안(노영민·양승조·심대평의원 발의안) 법안소위 재회부 및 홍재형 의원 발의안 법안소위 회부

'10. 9. 28 :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13차)

각 당의 입장 정리 및 세종시설치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충청권의 논의결과를 지켜본 후 심의하기로 결정

'10. 11. 29 :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설치법률안 통과

'10. 12. 7 :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종시설치법률안 통과

'10. 12. 8 : 본회의에서 예산날치기와 함께 세종시설치법률안 통과

10. 제정된 세종시설치법 주요내용

1) 명 칭 : 세종특별자치시

2) 지 위 :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광역시+기초)

지방자치법 미 개정

3) 구 역 : 예정+주변(청원군 강내면 3개리 제외)+연기군 잔여지역

면 적 : 466km² (연기361, 공주77, 청원28) 충남도 5.1% 감소

인 구 : 95천명(연기 82, 공주6, 청원7) 충남도 4.2% 감소

지방세 : 791억원 (연기 742, 공주 49, 청원?) 충남 4.6% 감소

4) 사무범위 : 기초+광역시사무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 가능(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고시)

5) 출범시기 : 2012. 7. 1

(1) 시장, 교육감 : 2012년 총선과 동시 실시

연기군수 2012. 6. 30. 만료, 공주시장·청원군수 유임

(2) 시의원 : 12 ~ 23명(별첨)

연기군의원 : 10명 자동 승계(비례대표 1명 포함)

연기군 지역 도의원 : 2명 자동 승계

소속의회 선택 : 출범 후 14일 이내에 속할 지방의회에 신고

공주시 : 시의원 5명, 도의원 2명

청원군 : 군의원 3명, 도의원 1명

※ 2014. 7. 1부터는 공직선거법 의원정수 13명(비례 2) 적용

(3) 국회의원

선거구 : 공주시 + 연기군

세종시 인구가 2011년 초에는 국회의원 최소 인구수(102천명) 어려울 것으로 전망
정치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 독립선거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선거구 획정은 총선 선거일전 1년 전까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행정·교통 등을 고려하여 확정

6) 기 타

(1)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총리실에 설치)

위원 : 중앙행정기관장 등 20명 이내(위원장 국무총리)

기능 :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편입지역(공주·청원)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대책 등

(2)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 설치

(3) 특별 지원 등

특별 지원 : 지역개발을 위해 행·재정상 특별지원(선언적 규정)

※ 2008. 8월 충남도 건의 및 심대평(안)을 인용

재정 특례 : 기준재정수요액 보정(향후 5년간 205억원씩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 설치('12. 12. 31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처리·지원

7) 향후 추진 및 전망

법령상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충남·북지사 참여 예상

※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되는 자치단체의 행·재정
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 논의

실무위원회 참여(부지사 참여 등)

지원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지원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출범준비단 설치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처리·지원

※ 현행법상 세종시 출범 준비는 건설청장

총리실 산하 “세종시 이전지원준비단, 11명” 운영 중

8)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의 예상 쟁점 전망

(1) 연기군에 도시행정기능의 예정지역 이전 발표 요구(기 요구)

중·장기적으로 조치원역, 학교 등을 제외한 기관 이전 예상

※ 조치원 등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은 공동화 문제로 반발

(2) 건설청에 도시행정기능 제외에 따른 문제점 요구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 반발로 도시행정기능 이전 반대

※ 충청북도, 공주시, 청원군 반발(자치단체 구역 할양)

(3) 세종시 지방공공건설비 부담 문제 등

시민단체에서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 지적

※ 정부의지 부족 및 세종시 설치법 반영 미흡

(4) 정치쟁점화

※ 2012년 총선 및 대선 쟁점화 예상

9) 예상되는 문제점

(1) 도시행정기능 이전 발표(원안대로 건설)

조치원 읍 등 기존 잔여지역 공동화 문제

참여정부 때, 연기군은 잔여지역을 제외시키면 잔여지역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에게 잔여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 요구

참여정부는, 지역발전은 자치단체의 고유의 몫이므로 지역발전(공동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하면, 정부에서 재정지원 등 약속

원안 건설에 따른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세종시 부담

시청, 의회, 보건소, 복합커뮤니티, 문화회관, 체육관, 복지시설 교육청, 학교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원으로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유지 한계

※ 참여정부 때는 재정특례제정 또는 교부세 등 지원 약속

(2) 도시행정기능 이전 반대(현 군 청사 사용)

도시행정기능 제외에 따른 문제점

국토해양부(행정도시 건설청)에 질의 후 답변에 따라 대응

※ 공간구조 및 도시 주요기능 재배치로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등 변경 충북, 청원군, 공주시 반발

세종시에 구역(토지, 인구)을 할양한 의미가 없음

※ 세종시 정상건설보다는 단지, 연기군 기득권층 입장 옹호

도시행정기능 대체기능 검토

도시행정⇒과학·산업(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 주장)

※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국회통과, 입지가 세종시, 국비 3조 5천억 확보

행정도시 축소·지연의 빌미로 작용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지연 책임이 상당부분 지역책임으로 전가

※ 정부의 정상건설의지가 제일 중요

(3) 세종시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재원대책 부재

연기군은 정부에서 지방공공시설을 건설 해주는 것으로 착각
지방자치법, 기본계획, 개발계획, 사례분석 등 소홀
공무원, 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실을 알렸으나 관심 소홀
2010. 10. 6.(수) / 도청 / 연기 부군수 및 건설사업소장 참여
편입에 따른 기대감은 있으나 의무는 소홀
연기군의원 및 공무원 자동승계, 세종시 편입 발전 기대감 등
주민의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지역의 새로운 갈등 및 지역 책임론
정치인, 공무원, 언론 등의 지역 책임론 등장
※ 기존 질서의 변화 예고

10) 충청남도 등 지자체의 대응방향

(1)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참여에 따른 건의사항 준비

공주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대책
세종시와 연계한 공주시(충남도) 발전방안 마련
→ 신속하고, 완벽한 준비 필요
※ 충남지사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기구

(2) 행정도시 정상건설 지원·촉구

행정도시건설 중기재정계획 분석을 통한 대응마련
※ 1단계 행정도시 건설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발굴 대응
행정도시 정상건설 촉구
건설청의 MPAS(행정도시 사업관리 시스템) 자료 공개 요구
※ 사업비집행실적, 인력·장비 운용, 문제점 등 일괄 검색 가능
※ MAPS(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
행정도시건설 현황보고의 일관성 유지
※ 업무보고 작성시 불리한 내용 및 통계를 수시로 제외하여 건설사업 문제점 파악 애로

(3)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재원대책 부재의 문제 관심

- ① 세종시의 문제이면서 연기군의 문제이지만, 충남도도 관심 필요
일정부문 충남도의 책임도 감수
대책 없이 도의회의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건의('09)
충남도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의 문제
세종시 출범 전에는 충남도 지역의 문제로 같이 해결하려는 자세
※ 연기군의 자문 요청 시 적극 지원
- ② 뚜렷한 대안 부재
세종시 출범 전 많은 지방공공시설 착공 검토 협의
※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시점 모호(착공, 준공 등)
- ③ 행정도시 학교건설 BTL사업 반대
세종시가 부담할 BTL사업비 추정액 2조원
※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가가 전액 부담 유도
- ④ 총선 및 대선의 정치 쟁점화
정부의 사전약속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제정으로 한계
- ⑤ 충청권 광역단체장에게 문제점 사전 설명과 협조 요청
세종시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4) 세종시 출범 지원

- 학계,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세종시 지방비 부담 재원문제 해법 발굴
- 편입지역 경계조정(계획수립, 조례개정, 공부정리 등)
- 사무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목록, 인계재산 조정 등)
※ 재산승계 제외 : 설치목적이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 (예, 산림박물관)
- 재정조치(지방세·세외수입 승계, 채권·채무 인계 등)
- 대중교통 관할구역 구역 조정
- 공무원 전출(도청 정원의 4% 정도 ?) 등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최종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별표 2의 지역을 각각 제외한다.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비율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 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시의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시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출범준비단을 둔다.

② 출범준비단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제1항, 제17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①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설치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실시하되,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제2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한 경우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법 제16조와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법 제16조에 따른 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인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기군과 새로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

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7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6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6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1항 제8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②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60조의2제1항 제3호의 공동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당해 시설이 완공될 때 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별 표 1]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제6조제2항 관련)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별 표 2]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6조제3항 관련)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제 3 장 행정도시 건설 쟁점사항

1.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행정도시 건설의 새로운 최대 쟁점으로 부각

1) 지방공공시설 건설비 부담 주체 : 새로운 자치단체(세종시)

기본계획(2006년) : 지방행정 공공시설 건설비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와 분담하되 별도 자치단체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부담

개발계획(2006년) : 도시행정시설(시청 등)은 현행 제원부담 주체는 지자체이지만 1단계는 국가, 지자체, 2-3단계는 지자체 부담

※지자체가 출범하면 지방행정 공공시설은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해결

2) 자치단체 출범 전 지방공공시설 건설 등 제원대책 수립 주체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 연기군 주도(지역)

3)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제원

공식적인 추정액 없음(학교 건설 BTL사업비 2조원)

※ 부담 제원에 대한 대책 등 준비소홀

4) 지방재정 부담 분을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함

5) 출범시기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되고 2012년 7월 출범으로 확정

2012~2013년 가능(연기군에서 희망하는 시기)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 지도소 등의 공공시설 건립 불필요

경찰서,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공시설도 불필요
 향후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재원 주체 불분명
 ※ 출범준비에 최소한의 시간 필요

2 행정도시 건설 축소·지연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1)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계획 및 집행된 공사비를 사업별·연도별 분석

<표 15> 행정도시 건설 예정비용

구분		합계	집행액 ('10.6월)	1단계 ('07~'15)	2·3단계 ('06~'30)
총계		22.5조원	6.16	17.02	5.48
정부	소계	8.5조원	1.03	6.03	2.47
	· 광역교통시설 등	3.15	0.47	1.80	1.35
	· 정부청사	1.60	0.29	1.60	-
	· 학교/시청사 등	3.75	0.27	2.63	1.12
LH	소계	14.0조원	5.13	10.99	3.01
	· 용지보상	5.01	4.30	4.84	0.17
	· 부지조성, 기반시설	8.99	0.83	6.15	2.85

2) 자치단체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될 경우 세종시 단위 공공기관 축소 가능성이 많음
 기존 연기 군 단위 공공기관 이용(시청, 의회,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지도소)
 ※ 이에 대해 당장 투자되지 않는 지방 공공시설 비용에 대해 추후에 국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대책 마련 절실

3) 민간부문(제일 중요)

많은 요인 중 정부 및 LH의 사업부진도 크게 작용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지연에 따른 시범생활권 착공지연 대비책

통합 후 생활권과 교량 등 착공지연과 1생활권 토지공급 지연

시 단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축소 움직임도 많은 영향

3. 사업계획 및 집행

※ 총공사비 15.4조원 중 1.17조(총공사비의 7.6%) 집행(6월말)

사업계획 집행실적 분석

1단계 기간대비 총공사비 집행실적이 33% 이하

기간대비 총 공사비 집행실적 : 12%이하 ÷ 36% = 33% 이하

조성비는 2009~2011년 사이에 제일 많이 집행('07 토공 백서)

1단계 기간 경과 36% ('07. 7 ~ '10. 6.)

1단계 총공사비 집행 12% (1.17/9.92)이하

1.17조원 : 지금까지 총 공사비 집행액

※ 부지조성, 교량건설, 환경시설 등 38건 건설공사 추진 중

9.92조원 : 1단계 총 공사비 (=17.02 - 7.1)이상

7.1조원 : 3단계까지의 용지보상 및 토지매입비 등(=22.5-15.4)

4. 행정도시 중기재정계획

계획대로 100% 집행해도 계획된 집행액 부족

〈표 16〉 행정도시 중기재정집행계획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2006	453억원	788	5,099	8,756	8,332				
2007		759	3,300	8,768	10,271	12,403			
2008			3,260	5,261	6,949	8,041	9,740		
2009				5,761	6,943	8,042	9,743	10,385	
2010					6,943	8,040	9,953	10,881	4,861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 및 계획을 100% 집행하면 50,458억원

※ 2015년 1단계까지 지출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75% 수준)으로 6.03조원

5. 당면 현안

중앙행정기관 이전 이외에 1차로 2015년까지 1단계 도시 건설 목표 달성

1)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중앙행정기관 이외에 국책연구기관 등도 원안대로 이전
지방공공시설 및 시 단위 국가기관 공공시설 등 건설

2) 원안에 충실한 적정 예산 및 사업비 집행

원안 건설 일정에 충실한 공사 진행
정부 예산 확보 및 집행
LH의 부지조성, 기반시설, 분양 등
※세종시에 대한 부담행위 적정성 검토

6. 애로사항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집행된 사업비 분석 부재로 대응을 못하고 지역 공감대도 부족

1) 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협조로 사업비 분석 어려움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공개거부로 체계적인 분석 지난

2011년 예산 및 사업비 확인 비협조

※ 2010 예산현액 7,317억원중 6월말 2,187억원(30%) 집행

2)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한계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다고 하지만 검증 안됨

※ 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추진되는지 확인 필요

7. 향후 과제

행정도시 정상건설 신뢰는 사업별 공사비 공개로

1) 집행된 공사비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분석

건설청 및 LH에 자료 요구(정보공개 청구)

2) 1단계 건설공사비의 적정 확보 및 정상 집행 촉구

기간 대비 공사 투입액 등 비교(33%)

※ 조성비는 2009~2011년 기간에 제일 많이 집행 추정(07토공백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정상 건설 촉구

3) 출범 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억제

150개 학교 중 2011년에 입주하는 6개교 외에는 BTL사업 추진

4) 홍보 강화 및 백서 발간

충청권의 단합된 지지 확보 및 정상건설을 위한 반성문

8. 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개발계획 중심)

1) 이주대책

(1)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일(2005. 3. 24.) 1년 이전부터 적법한 가옥을 소유·거주한자

단독택지는 1회에 한하여 전매 허용(입주권)

⇒ 2240여 세대 중, 단독 178세대, 공동주택 1필지(336세대) 계약('09. 10. 1차 신청접수를 받아 추첨 및 계약)

이주자택지 공급에서 제외 되는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특별공급 (286세대, 85㎡ 이하)

※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특별공급을 포기한자에게는 이주정착금지급 (500~1,000만원)

(2) 주민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세부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이주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6개월~1년)을 부여

이주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주자택지 조기공급

(3) 종교용지

예정지역에 위치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의 재정착 유도

※ 2010년 하반기에 “기타시설용도”지역을 협의양도자 및 실수요자를 상대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홍보('09. 8.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공급안내)

※ 주유소 용지도 협의양도자 및 실수요자를 상대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홍보

(4) 기업이전 지원

지자체, 기업체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대체입지 지원방안을 검토

(5) 보육시설 이전

예정지역내 보육시설(2개소) 이전에 따른 용지공급 지원방안을 강구

※ 토지공급지침에 미반영

2) 생활대책

(1) 생활대책용 상가용지 공급

이주대책대상자, 영업보상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되, 토지 및 물건 등 전부를 협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조사중, 10,000여명 추정)

1군 : 이주대책 대상자 등 (27㎡)

2군 : 무허가 건물 등 영업 (20㎡)

※ 2010년 상반기에 “근린생활시설용지”지역을 생활대책수립대상자를 상대로 수의계약 홍보('09. 8.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공급안내)

(2)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05. 3. 23 전부터 예정지역내 1,000㎡ 이상의 토지소유자로서 토지 및 지장물을 모두 협의 양도한 경우(외지인 포함) 단독주택지 공급 (4,200여명)

※ 2010년 하반기에 “단독주택”지역을 협의로 토지 양도한자를 상대로 수의계약 홍보('09. 8.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공급안내)

(3) 상업용지 우선 입찰참가자

보상대상 전체를 협의 양도하고, 보상금 범위내에서 5천만원~20억원 이하를 3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공급(4,740명, 3,400억원)

※ 2010년 하반기에 “상업업무용지”지역을 보상금 수령후 3년 이상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제한경쟁을 통해 공급한다고 홍보('09. 8.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공급안내)

(4) 주민 취업알선 등 생계지원

직업전환 교육, 지장물 철거 등에 주민참여

3) 영세민 대책

(1) 임대아파트 건립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의 공유지 보상금(334억원)을 활용하여 임대아파트 건립
공동사업시행사인 충청남도(시행사 대표)·공주시장·연기군수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수탁 시행(2011년 준공 계획이나 2010년 10월에서야 착공)

1,000세대('06. 3. 2.) ⇒ 500세대(384억원)(충남 144, 공주 19, 연기 123, 토공98)

※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입주희망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반영

⇒ 정부예산으로 500세대 추가→1억 미만 1천 세대 모두수용('10. 1.)

(2) 전세자금 대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지원

(3) 경로복지관 건립

근로능력이 없는 노약자 등을 위해 경로복지관을 건립하여 무료입주 지원
토지공사부담으로 100세대 건립('11년말)

⇒ 정부예산으로 100세대 추가→독거노인 대부분 수용('10. 1.)

4) 생활권 토지공급 추진계획('09. 8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공급안내)

〈표 17〉 행정도시 토지공급 추진계획

용 도	세부내역	대 상	공급예정시기	공급방법
공동주택	이주자택지	이주자	2009년 하반기	수의계약
	일반공급	실수요자	2010년 상반기	추첨/경쟁입찰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이주자	2009년 하반기	수의계약
	협의양도인 택지	협의로 토지 양도한 자	2010년 하반기	수의계약
	실수요자 택지	실수요자	2010년 하반기	추첨/경쟁입찰
근린생활 시설용지	생활대책용지	생활대책수립 대상자	2010년 상반기	수의계약
	일반공급	실수요자	2010년 하반기	경쟁입찰
상업업무 용지	생활대책용지	생활대책수립 대상자	2010년 상반기	수의계약
	정기에금가입자	보상금 수령후 3년이상 정기에금 가입자	2010년 하반기	제한 경쟁입찰
	일반공급	실수요자	2010년 하반기	경쟁입찰
	주상복합용지	실수요자	2010년 상반기	경쟁입찰
기타시설 용지	주유소 용지	협의양도자/실수요자	2010년 하반기	제한경쟁/경쟁 입찰
	종교용지	"	"	수의계약/경쟁 입찰

9. 부진공사 보완대책 수립

-부진공사 내역

1) 정부청사 (애초 계획)

기존 건립 추진 일정표

1단계 : 2008 하반기 착공, 2012 상반기 준공, 2012 하반기 입주

2단계 : 2009 하반기 착공, 2013 상반기 준공, 2013 하반기 입주

3단계 : 2010 하반기 착공, 2014 하반기 준공, 2014 하반기 입주

※ 설계 1년(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3년, 입주 6월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 매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지연
(현재) ※ 공사금액 : 629억원(진도율? 30%)

정부청사 1단계 총리공관 공사, 착공 : 2008. 12. 22.

2) 시청사는 전혀 추진 안됨

2010. 7. 1 자치단체 출범(행자부 2007. 5. 입법 예고)

2009년 7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 (행정도시 1단계 건설사업 기본공정표)



<그림 2> 시청사조감도

3) 복합커뮤니티

(1) 조성계획

주민복합센터 규모 산정('06. 11. 개발계획 65쪽)

〈표 18〉 주민복합커뮤니티 규모산정

구분	연면적(m ²)		면적(m ²)	비고	
	개별지표	복합화			
합계	-	-	10,100		
기초생활권	소계	-	10,725	7,200	
	동사무소	-	525	400	
	행정기능	450 ~ 600	525	-	평균치 적용
	아동복지시설	4,500 ~ 6,000	4,500	3,000	최소치 적용
	영아보육시설	-	-	-	
	유아보육시설	-	-	-	
	지역아동센터	-	-	-	
	노인복지시설	2,500 ~ 3,200	2,500	1,700	최소치 적용
	경로당	-	-	-	
	노인교실	-	-	-	
	복합문화시설	3,200 ~ 4,550	3,200	2,100	최소치 적용
	문화의 집	-	-	-	문화세미나실, 창작실, 강당, 사무실, 기타
	도서관	-	-	-	멀티미디어정보이용실, 열람실, 자료실 등
	지역생활권	소계	-	-	2,900
119안전센터		-	-	500	
순찰지구대		-	-	1,700	
6급우체국		-	-	700	

(2) '09. 7월 및 10월 보도자료

7월 : 2-3구역에 '09년 11월 착공(549억원) ※ 확인 필요

10월 : 1-2, 1-4, 1-5구역에 건축공사 착공(930억원)



〈그림 3〉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투시도

(3) 2010년 보도자료

2-3생활권(첫마을) : 2010년 상반기

1-2, 1-4, 1-5구역 : 2010년 하반기

2-3생활권(첫마을) 착공 검토 중

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발주 물량 급격한 감소

(1) 2009. 7월 보도자료 : 2009년도 하반기 공사착수계획 1조 7,077억원

※ 2조 1,963억원에서 정부발주분인 정부청사·복합커뮤니티 4,886억원을 제외

(2) 2009. 10월 보도자료 : 2009년도 하반기 공사착수계획 1조 2,435억원

※ 1조 8251억원에서 정부발주분인 정부청사·복합커뮤니티 5,816억원을 제외

(3) 2010. 3월 보도자료 : 2010년도 하반기 공사착수계획 2,832억원

※ 8364억원에서 정부발주분 5,532억원을 제외

(4) 생활권 부지조성공사(2009백서 174쪽)

3-1, 3-2 2009. 12월 착공

※ 3-1은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발주(보도자료)한다고 했으나 아직 미정(?)

⇒ 금년도까지 22개 생활권중 15개 생활권을 발주할 계획

5) 교량

(1) 미호천 1교

09. 12월 착수 (2010. 3월에 발주한다고 보도자료 제공?)

※ 금강4교와 함께 대중교통 중심도로(BRT) 연결교량

(2) 금강 3교

2010. 3월에 착수(2010 발주보도자료 미포함)

※ 중앙행정지역과 대학 및 연구기관지역과 연계 도로

(3) 금강 4교

2010. 1월 착수

※ 2010 발주 보도자료에 미포함

6) 공동구 건설공사(2009 백서 288쪽)

2구간 구간설치공사(토목+기계) : 2009. 6월

2구간 전기공사 : 2010. 1월

⇒ 금년도 발주계획(보도자료)에 미포함

7) 경로복지관

2006 백서 185쪽

근로능력이 없는 노약자를 위해 경로복지관을 건립하여 2011년 입주할 계획이나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음

8) 영구임대아파트(행복아파트)

충남도, 공주시, 연기군이 받게 되는 예정지역내 공유지 보상금(1.15km², 334억원)을 지역의 어려운 영세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토록 합의('06. 3. 2)

착공이 계속 지연되다가 올해 11월22일 착공으로 2011년말에 입주할 계획이나 불투명

9) 민간부문

민간부문은 주택 20만호, 상가 등을 포함하면 50조 이상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 투자로 완성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의지가 없자 민간부문 투자 올 스톱

10) 향후 점검대책

정부청사·시청사 지연,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지난 2년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

충청도는 행정도시에 대한 전략전술 없이 지난 4년 동안 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허송

민간인이 참여하는 범 충청권 행정도시 T/F팀을 구성해서 행정도시건설 대책 수립 및 감
시

최소한 행정도시건설 저지 및 지연의 빌미는 주지 말아야 함

제 4 장 참고자료

1.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한 연기주민 투고

[행정도시 원안에 부합하는 세종시설치법 제정]

-세종시설치법 최근의 쟁점과 과제-

최근 선진당의 권선택의원의 비난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선진당 사이에 오가는 공방의 핵심은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재부의'에 대한 것이다.

이를 민주당의 제기로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선진당의 주장인데 사실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전에 논의된 출범시기가 2010년7월이었던 만큼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재부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것이 단결해야 할 야당이 정치적 공방을 벌일 근본문제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재부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작년 7월22일 합의한 제한된 자치사무 범위를 가진 법적지위(무늬만 광역)에 대해 재논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것이다. 불완전한 광역은 결국 기초단체로 출범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를 수용할 연기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이완구전지사가 주장한 충남도 산하 도농복합특례시나 특례시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는 충청권 전체의 여론이며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최근 야권의 공방에 대해 언론에서는 이분법의 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우선 법제정을 하고 나중에 개정하면서 손을 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따져 법을 만들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선진당 방식이다, 민주당 방식이다 분리하려는 것인데 둘다 2010년 올해 내 제정이 목표라면 과도한 이론적 분리로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통일안으로 '올해 내 법제정을 위해 행정도시의 위상과 목표에 부합되게 법적지위와 자치사무, 관할구역, 출범시기를 10월내로 논의를 완결, 충청권단일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상정하면 될 것이다.

왜 단결해야 할 야당끼리 선방을 날리고 상호공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의견통일의 과정을 도외시하고 정략적인 사고로 논의를 선점하거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야당은 당장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단결하여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울 대상은 정부와 여권이니 충청권 내부나 야당은 아니다.

당장 우리에게서 원안 정상추진에 부합하는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최근 쟁점 중 작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안으로 가야하는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수정안 폐기 이후 원안 정상추진을 위해 당장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최근 세종시와 관련된 각 당과 지자체의 준비와 특이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연기군의 대처에 대해서도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여 특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9〉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당 설치법	민주당	선진당	심대평의원	연기군	세종시연기군 대책위
법적지위	광역단체	기초단체	기초단체	기초단체	기초단체
자치사무	100% 부여	단계 부여	단계 부여	단계 부여	단계 부여
출범시기	2012년	2011, 12년	2011년	'12년12월, '13년 1월	가급적 빨리
관할구역	잔여포함 청원의견수렴	잔여 포함 주민투표반대	잔여 포함 주민투표반대	잔여 포함 주민투표반대	잔여 포함 주민투표반대
제정시한	2010년 내	2010년 내	2010년 내	2010년 내	2010년 내
명칭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먼저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만이 광역단체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 작년 7월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일부 자치사무를 배제하는 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무늬만 광역이고 지방자치법상 이런 자치단체는 없기에 사실상 기초단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 10.11 칼럼)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실질 내용에서는 기초단체 출범을 동의하면

▶법적지위와 관련한 연기군의 기존 입장

광역단체로 출범하지 못했을 경우의 문제점 -2008년도 연기군 자체 보고서

- 자치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우려
-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보율은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법률안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설치방안은 기초+광역의 1계층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더욱 큼.
- 대전·광주·인천과 같이 2계층 일반 광역단체의 경우,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그 기초단체
 - 세입을 제외한 것이 광역단체 세입이지만, 세종시와 같이 1계층 광역단체는 기초단체 세입+광역단체세입이 됨으로 더 큰 차이가 남
- 일례로, 기초단체인 울산시의 '96년도 예산이 9,940억원이었으나 '97년도 광역단체가 되면서 1조 5,51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8년 후인 '05년도 2조6,447억원으로 3배정도 증가
- 주변지역규제 완화 등을 위한 주민복지시책 처리의 어려움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변지역규제 완화에 대하여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총남도를 거쳐 해결해야 됨으로 그 만큼 어려움 예상
- 각종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도 광역단체의 경우, 대단위 시설이 가능하나, 기초자치단체는 자원상 어려움 예상
- 시민의 사회적 역량과 지위, 재산권 문제
- 광역자치단체 시민의 경우, 그 만큼 사회적 활동역량도 커지고 (광역권 사회단체 구성 등) 지위도 광역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함.
- 아울러, 시민들이 소유한 재산권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가격 차이가 날 것임.
- ※ 만약, 이번 법률이 국회 통과되지 않아 행복도시가 기초단체로 설치될 경우, 신행정수도에서 특별 광역자치단체로 위안을 삼고 발전을 기대해 왔던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상실감과 그로인한 책임요구 및 반항은 예기치 못할 큰 파장 예상

서도 법적지위를 명칭으로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얇은 수로 주민들을 기만하겠다는 것이다.

① 2009년 2월25일 유한식 연기군수, 세종시 설치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무산에 따른 성명서

※법적지위가 기초단체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구규모에만 집착한 천박한 논의로 수도권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실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②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2009년 2월24일 성명서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특례시’로 만드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 수도를 만들겠다고 기획한 일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행정도시로 격하되더니, 이 정부는 고작 기초자치단체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세종시 건설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2009년 2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 도시로 격하시켜 건설하겠다는 음모로 특히 행복도시에 13조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다. 원안대로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④ 심대평의원-2009년 2월26일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의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충청권의 대다수가 세종시설치법의 법적지위에 대해 한나라당의 특례시 주장에 맞

서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위상과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광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례시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축소, 백지화 음모라며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정안 폐기 이후 별안간에 모두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부안에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 도입의 필요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도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행정도시는 국가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되는 도시이며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고려하여 지위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중추도시로서의 위상과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교통 등에 대한 지방재정 수요가 많은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광역으로 해야 한다. (지위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2005. 결산기준: 특별광역시80%, 도44%, 시41%, 군19%, 자치구45%)

결국 기초로 갈 경우 자체인건비 해결수준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 운영,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광역단체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지원이 필요하나 충남도내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재정적 한계가 있다.

한 예로 현재 행정도시의 학교건설은 충청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만도 2조원이나 되는데 이를 국비지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지위가 기초로 가면 고스란히 출범 후 충청남도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07년도의 충청도교육청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천8백억에 불과하고 이를 기초단체 세종시를 포함하여 1/17로 나누면 1백억원을 약간 상회하며 행정도시 학교건설 등 초기 교육여건 개선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도 없고 충청남도의 지원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무리한 출범 후 몇 달도 안돼 자진해서 행정도시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초단체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스스로 원안을 포기하는 천인공노할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법적지위와 관련해서는 자치사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광역단체를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정부의 직할인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가 세종시를 흔드는가? 상생의 길인가, 공멸의 길인가?]

-세종시 관할구역 및 출범시기-

2007년 5월7일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에 관한 연구용역 공청회가 주민 10여명의 단상점거와 주변지역 명의의 현수막을 들고 참여한 주민들의 합성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이다. 예정지 원주민들이 보상협의 때문에 눈 코 뜰새 없이 바빠 다른 일을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 시점에, 한편에서는 예정지 원주민들의 미래가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생생하게 현장을 확인할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연기군과의 통합출범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연기군과 세종시의 통합요구로 참여정부 당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원안 정상추진하는 그 좋은 시기를 공방과 반대로 허비하면서 세종시설치법(이하 설치법)은 17대 국회에서 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세종시설치법은 자동 폐기되었다.

당시 통합주장이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법률제정을 연기해봤자 나중에 또 다른 집단의 반발도 고려했어야 하며, 축소시킬 의도가 아니었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미뤄봐야 뚜렷한 대안도 없었음에도 발목을 잡았고 이를 한나라당이 지연의 빌미로 잡아 끝까지 법통과를 막았다.

행정도시의 심장은 정부청사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심장은 세종시청이다. 세종시청의 존재를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도시건설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더없이 중요한데 이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제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이후의 후속 조치도 점점 지연되고 어려워져 지금은 그런 것이 있는가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초기의 제정목적과 후속조치도 왜곡되고 있다.

그 후 우리는 수정 백지화 안으로 고통과 희생을 겪게 되었고 지난 2년, 8만 연기주민은 설치법 국회통과와 조속제정을 주문처럼 외치며 2007년 4월7일을 통한의 심정으로 반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통합을 주장하던 인사들에 의해 다시 통합 주장이 재연되고 있다. 이들도 수정안 당시에는 설치법 조속제정을 목 놓아 외쳤다. 며칠이나 지났다고 마치 정부가 원안 정상추진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 더 이상 축소나 지연은 단연코 없는 것처럼 5년 전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종시를 유명도시화 하려는 자들과 투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적지위를 분명히 광역단체로 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으로 출범시기와 관할구역에 대해 살펴보자.

설치법의 법적지위와 출범시기, 관할구역은 상호 연동된 것으로 하나가 잘못될 때 전체가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된다. 법적지위가 기초가 되면 이미 광역을 대비하여 준비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출범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길 경우 기초로 갈 수 밖에 없다.

출범시기와 관련 설치법은 행정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속 제정되어야 하지만 출범시기는 2개도 3개 시군에 걸쳐있는 지자체로 전례가 없는 자치단체의 신설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이나, 각 지자체별로 독자 운영하던 폐기물처리, 건축사무 등 자치사무의 통합·조정, 자치법규 제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소 2년6개월에서 3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올해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최소 2013년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청사는 설계에 1년 공사에 3년이 소요되며 과천과 울산은 2년, 용인은 3년, 전남도청은 5년, 충남도청은 6년이 소요되었다. 주민·세무·지적 등 전산망 구축 등에도 3년 소요된다.

지방세 부과 준비만도 전산기종 선정, 예산확보, 설치 및 자료구축, 재산세 부과까지 2년6개월 소요된다.

원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참여정부안으로 제출한 출범준비 기간을 현재에 적용하면

2010.11 세종시설치법 제정

2011. 5 자치단체 출범 계획에 필요한 예산신청

2012. 1 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연구용역 발주 및 연구

2012. 5 자치단체 출범예산 반영

2013. 1 자치단체 출범준비

2013. 7 최소 7월 이후 자치단체 출범가능하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014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정치권을 시작으로 2011년, 2012년 출범이 무리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선진당도 거의 견해가 일치하는데 정상적인 준비기간도 상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출범시키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보면 총선, 대선 등 주요한 정치적 일정에 또다시 쟁점이 되어 제2수정안이 제기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차기 지방선거에 맞게 여유있게 준비기간을 설정하면 될 것을 무리하게 앞당긴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이나 선진당이나 세종시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고 다른 출마자들도 지역구에서 연기·공주 한 지역구에서 공주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2011년, 2012년 출범이 가능하다면 출범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였기에 가능한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무작정 제출한 것이라면 민주당이든 선진당이든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출범을 앞당기면 청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소 4년이 걸리는 공사를 아무리 앞당겨도 청사를 지을 수 없는 2011년 상황에서 천막청사에서 업무를 볼 각오가 아니라면 대안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연기군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대목에서 너무 기가 막혀 눈물이 나올 지경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이다.

연기군 잔여지역을 당연히 포함시키고 관할 구역 안에 기존에 있는 연기군청을 사용하면 굳이 시청사 건립 공기에 대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다. 공교롭게도 '세종시연기군대책위(전 사수대책위)'가 지역에 7,500부를 돌린 팸플릿을 보면 애초 계획된 기능 중 시청사와 시의회, 보건소가 들어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심장 도시행정기능이 사라지고 과학산업기능이 담겨 있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연출이고 기가 막히고 아귀가 맞는 상황이다.

기존 세종시 시청사를 짓지 않고 연기군청과 연기경찰서와 연기교육청을 사용하면 출범을 앞당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창의적인 발상 아닌가? 그러나 예정지 원주민 중 누가 이런 일에 동의할지 알 수가 없다. 2005년 잔여지역 통합을 외치는 과정에서는 보상 때문에 목소리 한번 제대로 안낸 건설지연의 실질 피해자인 행정도시 예정지 원주민들이 여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로 연기군에서 행정도시 원주민들의 존재감이 없어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좋다. 시청사 대신 연기군청을 사용한다. 당장은 예산을 줄이고 줄인 예산도 행정도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지도 못하고 정부는 지출을 자제한다. 그러면 나중에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제대로 된 시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타 지자체는 모두 해당 지자체가 감당했는데 그제야 우리가 아직 안 쓴 돈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 행정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하면 지방행정 공공시설 건설비는 자치단체 설립 전까지 만 중앙정부 책임이다. 시청사도 현행 자원부담은 지자체이지만 1단계(2015년)는 국가와 지자체, 2-3단계는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충남도청 이전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한계와 충남도의 노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표 20> 세종시청사 건립사업 추진개요

행정도시 시청사 건립 사업추진 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충남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3-2생활권내) • 규 모: 대지 41,661㎡, 건물 33,213㎡내외 • 총사업비: 943억원(부지매입비 272억원 포함) • 사업기간: 2008년 ~ 2012년(2012년 하반기 개청 예정) • 입지시설: 시청, 시의회, 보건소 청사 					
건축규모	구분	합계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
건축연면적 33,213㎡	면적(㎡)	33,213	25,550	3,911	3,752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단지 잔여지역에 포함되어 세종시민 만 되면 된다는 주장으로 2년을 끌었고 지금도 별반 다른 요구나 주장없이 세종시민만 된다고 했는데 연기군청 활용은 향후 통합주장의 핵심진영에서 어떠한 주장이 대기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한다.

누군가는 필자를 보고 연기군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말한다. 개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나 본인은 분명 잔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누구보다 연기군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연기군 먼저’가 아니고 ‘세종시와 연기군을 함께’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 제대로 된 원안 정상추진의 결과물인 세종시는 연기군의 ‘천년공간’이 될 것이다. 세종시에서 일자리도 나오고, 아이들 교육문제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도, 문화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생활권 연기군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살길은 기업유치도 아니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아니고 세종시 원안을 지키고 정상궤도를 따라 건설되도록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살길이기 때문이다.

[수렁에 빠진 관할구역, 상생으로 가는 묘책은 없는가?]

1.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연기와 청원의 관할구역 주장들

세종시설치법 중 특히 난제가 관할구역이다. 지역마다 입장을 굽히지 않고 기본계획, 개발 계획, 실시계획과는 무관하게 관할구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기군은 잔여지역 통합을,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통한 여론수렴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주는 편입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에 의거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관 지자체들 사이에 타 지자체의 요구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특히 연기와 청원사이에 상대주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0월7일 '세종시 편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충북토론회에서 청원 군의원은 "174km²에 달하는 연기 잔여지역 포함은 문제없다고 하면서 33km²에 불과한 청원지역이 제외될 경우 어떠한 차질이 있는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청원의 주장에 대해 연기군의 입장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사항과 청원군을 제외해 달라는 사항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청원의 편입제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 연기군과 청원군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써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핑계로 주장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상대가 자신의 거울이면서 말이다. 또한 양쪽의 표면상 요구는 다르지만 주장의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성격은 다르나 세종시를 볼모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청원은 편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고 연기는 세종시와 공동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통합이라는 것이다.

청원에서 제기되는 여론수렴의 방법에는 군의회 의견수렴,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이 있는데 만약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투표 과정에서 주민분열과 갈등은 더 첨예해 질 것이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여러 변수로 지연될 경우 법제정은 한없이 밀리게 된다. 또한 여론수렴 대상은 편입대상 주민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대상 주민들의 목소리는 소외된 채 편입 외 지역에서 더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현재 전수(대상주민 전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지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벌써부터 찬반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충북도나 청원군 자체의 조정능력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단체장도 원칙과 결단만으로 치고 나가기에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럼 누가 나서야 하는가?

2. 연기 잔여지역 통합 주장의 맹점

한편 연기에서는 모두가 잔여지역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지금 이 마당에 잔여지역 문제를 바로 잡자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생기겠는가, 그러니 법제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도 제발 참으란다. 그러나 연기군과 세종시가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세종시 관할구역과 관련해 심대평의원은 ‘잔여지역 통합을 반대하는 연기군민은 없다’고 연기대책위와 간담회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7년 연기군통합시대책위가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막으며 잔여지역 포함을 요구할 때 남면, 금남면, 동면, 서면의 이장단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추진 연기군 주민연대’를 결성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주장하였고 지금도 행정도시 예정지 원주민을 비롯하여 많은 연기군민들이 통합보다는 잔여지역은 정부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예정+주변지역, 원안대로 관할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여지역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기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합을 주장하거나 애초 관할구역으로 출범을 주장하거나 잔여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 무엇이 실질적인 잔여지역 대책이 되고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에 부합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돌이켜보면 세종시 편입으로 인한 군세축소와 독자 존립문제가 대두된 연기군은 2006년에는 독자 시승격 추진을 주장하다가 당시 연기군의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잔여지역 포함 요구에 이르게 된다. 다만 2008년 초 정권이 바뀌고 세종시설치법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면서 통합요구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올해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다시 통합 요구가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잔여지역 통합의 본질은 연기군-세종시 공동생활권의 요구이다.

잔여지역 통합의 근본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여러차례 핵심 주장자들과 토론을 해보았지만 군세축소, 독자생존의 어려움 외에는 뚜렷한 주장을 확인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가 몇가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면』-세종시연기군대책위

- ① 1,250여년 간 지속된 “연기”라는 지역공동체가 그대로 유지
- ② 재정여건이 좋아져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 가능 보통 교부세 · 시세(도세)세입증가
- ③ 지방 재정 확충과 인구 증가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가능
- ④ 문화 · 복지 ·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도로 · 교통망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
- ⑤ 행정도시의 신설 40여개 중.고교 진학 등 교육 선택의 폭 증가 교육여건 개선

위 5개 항목이 잔여지역의 대책이라면 결국 세종시의 세수 전체를 세종시의 조기 정착화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국비를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세종시의 세수만으로 잔여지역에 투입한다면 도시 정착화 지연, 지방재정 부담의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이다. ⑤번의 교육 선택의 폭 확대는 연기-세종의 공동학군제 협약으로도 실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적정 통학거리와 등학교 간 안전담보, 기존 연기군 소재 고등학교의 명문화 정책 제정과 학생 유출 등 장단점이 상존하기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기군은 세종시에 편입되어야 할 5가지 당위성을 주장한다.

- ① 행정도시 편입에 따른 인구 및 면적감소로 존립기반이 흔들림
 - 편입면적 186.64km²(51.7%), 편입인구는 12,181세대 30,466명(36.2%)으로 면적174.74km²(48.3%) 인구5만여명 : 군 존립기반 위축
- ② 행정도시편입 재정손실
 - 행정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의 편입에 따른 세입감소 2010년을 기준 연간 1,343억원 예상
 - 행정도시가 출범 건설되기 까지 총 5,198억원 재정적 손실 예상
 - 예정 및 주변지역의 편입에 따른 세입감소 3,302억원

- 공유재산의 무상승계로 인한 손실(세종시) 487억원
- 주변지역 투자사업 제약으로 세입감소 1,409억원
- 행정도시에 연기군의 재산 및 세입재원을 제공함으로 잔여지역은 상대적인 빈곤감 초래
- 잔여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주거용 택지개발 등 개발제약에 따른 재정수입 결함

③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

- 행정도시와의 차별적 열등감으로 연기군 잔여지역 교육기능 붕괴, 세종시와 똑같은 학군이 안되었을시에 잔여지역의 교육은 청주, 대전, 세종시에 인구전출로 인한 공동화

④ 지역공동화 가능성 및 정체성 문제

- 잔여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근도시로의 (세종시, 충북 오송, 대전시, 천안, 청주) 인구 및 부 유출, 세종시민과의 빈부격차로 인한 상실감

⑤ 잔여지역 제외시 주민 대혼란 및 갈등 반복

- 원안 결의 및 잔여지역포함 주민의지 결집행사
- 서명운동:29,667명, 정상추진집회:45회, 촛불문화제 추진:146회, 릴레이단식:150회

하지만 ① 면적은 전국郡 평균에 미달하지만 인구는 전국郡 평균을 상회한다는 점 ② 재정 손실의 경우 세입이 감소된 만큼 세출근거도 없어지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평의원 발의안에 의하면 세종시가 유상계약 후 재산승계로 되어 있고, 이러한 재정감소에 대해 2007년 당시 참여정부가 제시한 재정보전대책 (5년간 동일한 교부세 지원)을 거부한 바 있음 ③ 교육문제는 연기-세종 공동학군제 추진으로 대안마련 가능 ④ 지역공동화는 편입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하에 정부에 인센티브를 요구해야지 통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 ⑤ 주민 혼란 주장은 감성적인 통합주장 만 있을 뿐 잔여지역 문제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가 전혀 없었던 점과 연기군민은 행정도시의 원안 정상추진이 우선이었고 이후 연기군과 동반발전임. 또한 2006년 여론조사를 현재의 주민여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행정도시 위기에 대한 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종합적으로 위 5개항을 살펴보면 잔여지역의 위기는 재정손실, 교육문제, 공동화, 갈등으로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것인데 과연 통합만 되면 잔여지역의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전무하다. 무조건 통합되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인 판

단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상식적으로 행정도시 건설비용을 지출 상한액까지 모두 쓴다고 해도 8.5조 중 일부라도 잔여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또한 잔여지역을 포함하여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담보도 없이 관할구역에 포함만 되면 잔여지역 대책이 세워진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는 것이다. 환상이 깨진 후 오는 고통은 온전히 주민의 몫이다.

2010년 9월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정부지원책을 확실하게 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 법에 제시된 제반 특례를 연기군 잔여지역에 적용하여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동안 통합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니 세종시민만 되게 해달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은 세종시민 되는 것은 잠시 미루더라도 잔여지역에 대해 정부에 인센티브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인센티브의 핵심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예산에 관한 지원특례, 군세축소에 따른 특별지원, 재정지원, 교부세 특례보장이 우선이고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공동 생활권을 요구해야 한다. 공동학군, 일자리 보장, 연기군 공산품, 농산물 우선 공급권, 공무원 처우 보장(세종시 공무원 선발시 연기군청 인센티브), 세종시 시설 사용 혜택 등 전문성이 부족해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지만 통합없이 세종시와 공동생활권의 지위를 보장받으면 우리는 현재의 쾌적한 연기군에서 환경을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교육과 일자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동반발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에 발목을 잡지도 않아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누가 더 잔여지역을 위하는가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인가 궁리해야 한다. 압도적인 여론을 제시하는데 현 시점에서 연기군민의 판단을 보다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2006년, 2007년 시절 좋은 때의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수정백지화 저지투쟁을 마친 지금 아직도 유명도시의 위기 속에 불안해하는 현재 시점의 군민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을까?

중요한 것은 세종시에 포함되던, 안되던 잔여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인데 여러 방법 중 여러모로 부족한 방법 하나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면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 인양 호도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가지 제안을 해야겠다. 현재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주민들에게 세종시설치법 단일안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이 있다.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었지만 모두가 사분오열되어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충청권지자체, 정치권, 주민들이 세종시설치법률안에 대해 현재의 지자체 주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 세종시설치법을 백지위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원안 정상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가장 최적의 설치법을 만들 것이다. 정부에게는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제고할 수 기회이기에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를 다시 정부발의안으로 만든다면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문위원안의 형식으로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올해 2010년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충청권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함께 정상추진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행정도시를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과밀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안 사수를 외쳐왔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연기군의 발전조차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행정도시와 함께 연기군의 상생 발전을 이룩해 낼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을 믿고 우리가 만드는 도시가 애초의 위상과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남았을 뿐이다.

2.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

1) 대전광역시(2007년 10월 서면 제출)

(1)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대전광역시의 긍정적 영향

행정도시 인근 충청권의 인프라 확충 등 개선효과 기대

대전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력 제공

대전은 행정도시에서 대전 둔산도심 방향의 호남축과 대전 기존도심을 지나는 경부축의
결절점에 위치, 행정도시 광역도시권의 거점도시로 성장 가능

기능적으로 행정도시 배후 핵심도시로서 중앙행정, 군사국방, 과학기술R&D, 금융상업물
류등 광역적 도시서비스 지원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

특히, 상호보완적 형태의 대전+행정도시+청주의 네트워크도시 구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2) 행정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대전광역시의 부정적 영향

품격높은 도시기능을 갖춘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권 기능 및 인구의 이전을 견인하지 못할
경우 대전을 비롯한 기존도시들의 일부 인구와 기능 이탈 우려

2012년 행정도시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부작용

행정도시 광역도시권내 도시의 규모 및 위상에 따른 전략수립과 비교우위에 있는 도시기
능 분담이 필요하나, 기능과 시설측면에서 행정도시와 타도시간 질적 양적 격차가 발생할 경
우 오히려 새로운 도시 문제 발생

기존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기존 수도권에 예측
되는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큼

(3) 행정도시와 연계된 지자체의 발전방향(자체 구상중인 발전방향)

대덕특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경우 행정도시와 서로 상생하는 발전전략
의 수립이 가능

광역 및 도시 기능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략적 과제

행정도시 광역권이 국초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가 최대한 이전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모, 기능, 측면에서 안정된 행정도시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역할이 중요하며 행정도시 광역도시권 차원에서의 경쟁력있는 도시 인프라, 도시 서비스, 교육문화 등의 한 단계 발전된 도시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중앙행정 및 국방, 과학기능 이외에는 문화, 여가, 관광, 의료 등의 기능 배분 및 강화가 필요함

대전의 경우 첨단지식산업의 기반이 튼튼하고 장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대학과의 연계발전 등을 통해 교육 연구 및 첨단 기술의 혁신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특히 2030년 인구 50만 목표로 추진하지만 현재('07.10) 4만5천명의 인구로 출발하는 행정도시가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 배후도시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연결 교통망이 환승을 전제로 한 BRT로 선택한 것은 현실성이 없고 실제 자가용 이용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행정도시까지 연장건설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임

※ 대전도시철도 1호선 환승 주차장인 외삼역에서 행정도시까지는 불과 약 10km 거리로 도시철도 연장시 약 10분, 자가용 이용시에는 약 8~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BRT를 통한 환승은 현실성이 없음

청주공황 활성화를 통한 행정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수용

(4)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대전 충남북의 발전 잠재력을 공유, 공동번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권발전특별법」 등의 제정이 필요

가칭 「행정도시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및 지원근거 마련

(5)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 전폭적 대덕특구 지원을 통한 대전의 과학 수도 육성 방안 제시가 필요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대전의 경우도 청주공항이 국제화될 경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각종 광역사업(도로건설, 도시기반시설 확보)의 경우, 기존 도시 내부와 동시에 연결내지는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예를 들면,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되는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행정도시와의 연결)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물류, 유통계획(남대전 종합유통단지), 문화 여가계획(성북동 관광단지 조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필요

(6) 기타 행정도시와 인근도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행정도시와 인근 도시 간 의견 조정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

광역도시권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중부권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대청호반 관광벨트 조성 검토

광역권내 기 구축된 상수도등 광역 공급 처리시설 등의 공유를 통한 기반시설 비용의 중복 투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이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수립 필요(남 공주역 이용방안 등)

현재 설계진행중인 "외삼동~행정도시" 간 BRT 부분은 장래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도시 철도 1호선 연장 검토 필요

광역 도로망 확충뿐만 아니라 행정도시와 인근도시와의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광역버스 운영방안(광역 BIS 등)에 대한 방안 수립 필요

행정도시 2단계 수돗물 공급(140m³/일)과 주변지역에 대전광역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국제회의시설 등 대전광역시에 기 설치되어있는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방지 필요

2) 공주시

(1)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공주시의 긍정적 영향

행정도시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한 정주환경 수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등 호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도시가 정착하는 2030년 이후에는 인구와 고용증가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

(2) 행정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공주시의 부정적 영향

시세위축 초래 : 공주시 전체면적의 8.2%, 전체인구의 5.2% 상실
주변지역에는 공주시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우량기업인 남양유업, 공주영상대학, 육군32사단, 충남산림박물관, 농협공제연수원 등 주요 기업체와 기관이 소재
※ 공주시의 인구 : 70년대 23만 명에서 현재 13만명으로 감소
재정적 손실 : 교부세, 지방세 등 연간 300억원
행정도시로 인한 블랙홀 현상으로 공동(空洞)화 급속진행
주변지역 행위제한,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타격 심각
대단위사업 유치무산 : 충남도청 환청,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제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중 중아부처 공모에서 제외
광범위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도시 건설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개발 시너지 효과차단
행정도시는 공주시와 연기군에 건설되나, 대전시와 청주시 충북도 등에 중심적 기능 배치하여 소외감 심화
지역주민의 민심이반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심화

(3) 행정도시와 연계된 지자체의 발전방향 (자체 구상중인 발전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원하는 지역거점도시
행정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중심 배후도시' 로서 행정지원시설을 유치하고 충남의 중추관리기능 담당

광역교통망 체계강화, 물류시스템 정비

중심상업·업무기능의 강화 및 문화, 교육, 의료, 과학 등 생화학 서비스산업 육성
꿈을 현실화하는 정보화 미래도시

전통과 첨단, 지식·정보산업이 결합된 문화컨텐츠산업 육성(게임, 영상, 어패럴 등)

지역정보화기반산업 확충 및 주변 광역지역권과의 연계 도모

대학의 전문화 기능 강화 및 연구소 유치로 통한 연구, 교육 기능분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관광휴양도시

행정도시의 관광기능 보완 및 역사문화의 전통성 유지

금강변 친수공간 활용 및 체험형 관광기반시설 조성

행정도시 블랙홀 현상으로 인한 공동화 대비를 위한 도시중심성의 강화

(4)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정진석 국회의원의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연결지역(공주시, 연기군, 청원군) 지원에 관한 법적장치 마련

국무총리실 연결지원추진단을 두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대책수립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 입법 전에 우선 정부차원 지원대책 확정발표 되어야 함

(5)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필요사항

교부세 및 지방세 등 보전 및 지원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 13조(구역변경과 패치분합의 경우) 반영하여 교부세 20년간 보전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대체재원 지원(연간 200억)

행정도시 기능보강 및 공동(空洞)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조성」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송선리, 장암리, 무릉동, 월송동 일원, 5백만㎡ 규모

교육+연구+과학+문화+첨단사업 기능, 국가시행(건설교통부)

행정도시 출범 축하 병행 「대백제전」 개최

2010년, 백제문화엑스포,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

행사에 따른 도시정비 : 2,657억원(국비 1,186, 지방비 1,1198, 자담 38)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중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공주시 응진동 일원, 799,056m², 2959억원(군특672, 지방비 672, 민자 1,615)

본 사업은 경주의 신라문화권 개발사업과 같은 성질의 사업이나, 지방비와 민자 과다로 사업추진 담보상태

행정도시 관광기능 보완사업으로 연계하여 국가에서 시행요망

「동아시아 역사예술도시 조성」 사업

5세기 전후 동아시아 제국을 형성한 백제의 역사·문화 복원, 공주시 일원, 동아시아 역사 예술도시 조성·역사문화관 건립 등

2007. 6. 11 정진석 국회의원 등 12인이 입법 발의한 사안임

: 「동아시아역사예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도시 관문인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연결도로 개설

국도 17km(국도 23호선 : 9km, 국도 40호선 : 8km)

행정도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남부우회도로」 개설

국도 36호, 서공주IC, 남공주IC, 국도40호, 국도32호선 연결 L=18km, B=20m

「행정도시 이주민촌」 조성

단독주택을 원하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

70~100가구 수용, 30,000m² 규모

행정도시 관광레저 기능수용을 위한 「금강 경전철」 건설

행정도시 ~ 공주, 16km(단계적으로 서천 금강하구둑과 연결)

공주의 백제역사·문화, 금강, 계룡산 등 관광자원 연계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행위규제 및 토지거래허가 등 조속히 해제

개발행위 규제, 토지거래허가, 주택투기과열지구 등 해제

주변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가장 신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공주시 소재 건설업체, 자재생산업체 등과 공사하청 및 물품수주 등 지원방안 마련

공주시 소재 건설인력 고용방안 마련

(6) 기타 행정도시와 인근도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귀 청에서 마련 중인 본 용역이 인근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생색내기를 위한 형식적인 용역 성과물 납품과 홍보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와 함께,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야할 것임.

3) 연기군

(1)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연기군의 긍정적 영향

국가정책 수단에 의한 지원시 동반 성장 가능성 증대
행정도시 배후 지원기능 담당, 이미지 제고, 매력 상승 등

(2)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연기군의 부정적 영향

자립기반 상실로 군세약화, 존립위기 초래
인구 36%, 면적 52%, 지방세입 43%, 세외수입 30% 감소
관내기업 51% 감소, 학교 48% 감소, 재정 손실 등
급속한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
지자체 경영 장애 등 역할 수행 지장
지가 상승 등 개발여건 약화 역점사업 추진 제동
잔여지역 문제로 주민 간 갈등 팽배(통합 시 문제)
공동체 해체 위기, 정신적 공허감 또는 불안감 팽배
연기군 인근(예정지역 북부)에 비선호시설 집중 건설 민원발생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 신뢰감 저하로 직결
감당할 수 없는 복합민원 발생, 일반업무 추진 곤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부정적 영향
행정도시 편입 및 주변지역의 신규공자설립 불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개발제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금강수계지역 개발제한

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이후에는 공장 설립 입지가 더욱 적어져 지역 경제성장에 악영향

교통행정에 있어 부정적 영향

행정도시 광역교통축(대전-청주-행정도시)에서 소외

※ 행정도시 관문적 기능 : 오송역, 청주공항 / 남공주역

※ 광역도시를 중심축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 대전, 청주,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 이주 및 건설기간 중 대중교통 대책 미흡

※ 예정지내 주민 이주로 인한 농어촌 버스 재정난 가중

시내버스 운행노선 폐지시 영농, 미이주 주민 불편 대두

※ 건설기간 중 건설 및 관리인력 등에 대한 대중교통대책 없음

(3) 행정도시와 연계된 지자체의 발전방향(자체 구상중인 발전방향)

「연기군 도시기본계획(2020년 연기군 기본계획)」에 의한 발전계획 2007.11월 완료

역동적인 건강도시 연기 건설 (행정도시와 상생발전 도시, 첨단기능 도시, 청정환경도시)

「행정도시와 동반발전 전략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의한 동반성장 전략수립 2007.12월 완료

행정도시와 동반성장 또는 자족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 개발

※ 행정도시와 동반성장을 위한 장애 극복 방안 등

u-City 구현 및 3D 지리정보체계 구축

연기군, 건설청이 추진하고 있는 u-City 공통 서비스 모델을 공동개발 및 활용하여 상생발전의 전기 마련

자가정보통신망,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

※ 연기군·행정도시건설청 u-City 구축협력 협약 체결(07.4.19)

행정도시와 연계된 광역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관련 자료 공동이용

친환경 및 근교농업(화훼, 신선채소 등) 중점 추진, 농산물 직거래 및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4)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연기군 잔여지역에 성장잠재력 배가를 위한 지원 근거 법제화

국가의 특별배려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구, 근본대책 마련

자족적 성장·발전이 가능한 동력창출의 새로운 기능 분담

※ 자치단체 존립기반, 교육, 일자리 창출, 광역 택시영업권 등

행정도시 건설에 연기군 도시기본계획 적극 반영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변지역 규제 완화 및 지원방안 확대, 이행 철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법규 정비

친환경, 근교농업 추진 등 다양한 「농업, 농업인 살리기」 사업 지원

행정도시 등 인근 주민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장 건립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장애 극복을 위한 관련법, 제도 개선

지역개발 장애 극복, 산업 입지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선 등

(5)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군세 약화에 따른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교육, 행정도시 연계 생활권 확대방안 등

주변지역 문제와 관련한 갈등 조정 및 근본적 해결책 마련

주변지역 규제완화, 주민의견 반영 도시관리계획 수립, 비선호시설 배치계획 조정, 주변지역 지원계획 확대 등

광역 교통망 정비 및 행정도시와 생활경제권 통합

연기군이 포함되는 광역교통망 정비 및 노선 확충 등

※ 고속도로(행정도시-청주공항) 및 BRT노선에 조치원 포함

※ 조치원 서북부 우회도로 건설 및 행정도시 연결도로 확장

교육, 택시영업권 등 생활경제권 통합 및 연기군 포함 교통계획 수립

관광자원 등의 공동개발 및 활용

고복저수지 주변 및 연기군 관광벨트 공동개발, 활용

※ 관광 레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행정도시 배후지원 기능 강화

행정도시로의 인적자원 및 인구 유출 방지대책 강구

교육특구 지정 및 교육사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

기존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재생산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공동활용 및 연기군 분산 배치

종합운동장, 체육관,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 동등한 사용권 부여

(6) 기타 행정도시와 인근 도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행정도시 건설로 인발생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절대다수 주민의 이행와 공감대 형성

상생발전의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지역의 적극적 참여 유도

상생발전위원회 등 지역 참여, 모든 사안에 대한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과 방법 확대

지역의 안정기반 지원 및 지속적인 신뢰 유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추진

정부, 지자체, 주민간 절대적 신뢰를 위한 지역 안정대책 강구

4) 충청북도

(1)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충청북도의 긍정적 영향

행정도시 관문으로서의 오송역 건설, 청주공항 활성화 기대

청주권이 행정도시의 배후 기능을 수행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회

행정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연계도로망 확충 및 BRT노선 등 건설로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 기대

(2) 행정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충청북도의 부정적 영향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의 행정도시로의 쏠림 현상 우려

행정도시와 연결지역의 개발 수요에 따른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훼손

행정도시의 쾌적한 도시 건설에 따른 삶의 질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적 시각 예상

현재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충남 연기군 동면에 건설 중인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이 행정도시에 편입될 경우

지방세 감소, 충북권역내 공용창출 효과 및 부가가치 감소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3) 행정도시와 연계된 지자체의 발전방향(자체 구상중인 발전방향)

행정도시 관문으로서의 오송역 개발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기하고 오송생명 과학단지가 행정도시의 배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

남부권역에 황간유통단지 개발계획 반영 및 시행으로 남부권 및 중부권의 물류유통개선 체계 확립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현재 건교부에서 물류유통단지 중장기계획 수립 중

(4)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지원방안 필요

지나친 행정도시 집중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5)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필요사항

청원군 일부 지역의 행정도시 편입으로 인하여 군세의 위축과 교부세 등이 감소되는데 따른 적정한 보전대책이 필요

현재 건교부에서 수립중인 물류, 유통, 중장기계획에 남부구너역의 유통단지(황간) 계획에 반영 및 지원시설 국비보조 등 필요

청주국제공항 연계 교통망 조기 구축

(6) 기타 행정도시와 인근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공항으로 육성, 대전과 충남북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도시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건설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

5)청주시

(1)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청주시의 긍정적 영향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질적 성장
건설경기 회복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및 인접지역의 개발 활성화 예상
행정도시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첨단 산업 육성

(2) 행정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청주시의 부정적 영향

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경직
주변지역 설정으로 주민민원 증가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발생 우려
행정도시로의 인구 유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 및 각 기관의 위축

(3) 행정도시와 연계된 지자체의 발전방향(자체 구상중인 발전방향)

행정도시 관련 특화단지 조성
이전기관 관련 산업체 및 관련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활성화 구상
행정도시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해 행정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수용

(4)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행정도시의 지원 및 배후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도로, 철도, 항공 등 간선교통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교통망 구축계획 수립
지가적정성 및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수립
행정도시 광역권(대전, 충남북) 광역도시계획 필요
미호천 수질종합대책 및 협의회 운영

(5) 행정도시와 연계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필요사항

행정도시와 연결되는 광역도로교통망 확보

행정도시의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17 전투 비행장 이전, 리무진 버스 운행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6) 기타 행정도시와 인근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국가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출발한 행정도시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더불어 주변도시와 연계를 강화하여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함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해 먼저 기반시설의 확충,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그리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적 종합관리대책이 요구됨

중부권 영어마을 공동조성, 대형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

행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각 지자체 및 행정도시)

3. 행정도시 건설이 인근 도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1) 행정도시 건설의 긍정적 영향 분석

가. 국가 전반적인 효과

(1)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및 지방이 모두 함께 잘 사는 효과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선도도시의 역할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권의 교통·주택·교육·환경문제 등이 완화되는 효과

(2)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문화 기능의 분산 효과

행정수도 건설은 인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행정기능의 분산을 촉매로, 수도권에 편중된 정치, 경제, 문화 기능의 분산을 가져올 수 있음

분권·분산·분업 등 삼분(三分) 사회를 구현하는 결정적 계기

나. 충청권 공간구조적 측면의 기대효과

행정도시는 대전-청주-천안-아산-공주를 아우르는 충청광역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는 방어벽 효과

충청권에 수도권의 중앙부처가 이전함으로 인해 관련 기능을 수도권에서 분산을 유도하는 흡수효과

행정도시가 건설로 인해 전국 주요도시로부터 행정도시로 통행시간과 이동거리가 감소하여 전국적으로 행정도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며 이에 따라 통행시간비용과 물류비용 등의 교통비용이 절감 효과

다. 충청권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1)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

“신행정수도 기본구성 연구(2003)”에 따르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수도권 인

구가 51만 명 정도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 이전까지를 고려하면 170여만 명의 인구분산 효과를 예견

행정도시의 경우에도 신행정수도보다는 인구분산 효과가 적겠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수도권내 거주인구의 분산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2) 충청권 지역경제가 활성화

고용기회의 증가가 이루어져 충청권의 지역생산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충청권 문화·심리적 기대효과

(1) '서울=중심, 지방=주변'이라는 고정된 인식을 해소

행정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중추관리기능의 분산으로 충청권이 수도권에 대해 갖는 열등의식, 주변부 의식 극복

(2) 행정도시 주변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

행정도시와 주변지역에 신규대학의 입지가 이루어지고, 비충청권으로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충청권으로 유입될 가능성

(3) 외국인들의 방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광자원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기능의 활성화가 기대

2) 행정도시 건설의 부정적 영향 분석

가. 현재 직접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부정적 영향

(1) 행정도시 구역 편입 지자체의 행·재정적 손실

행정도시 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자체의 경우 면적과 인구의 상실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력 위축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의 경우 행정도시 구역 편입으로 면적, 인구 상실
교부세, 지방세 등 손실

행정도시에 행정구역 일부를 편입시킨 지역의 경우 교부세, 지방세 손실 발생
공주시의 예 : 인구 감소로 교부세, 지방세의 연간 300억 원의 재정적 손실

(2) 행정도시 편입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행정도시 주변 지역은 행위제한,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타격

행정도시 주변 지역은 충남도청 이전 과정,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등 대단위 국가사업에서 제외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은 주변도시와의 연담화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완충지역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지정됨

하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은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한 요인

편입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

평생 농업에 종사해 오던 주민들이 다른 직종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나. 향후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

(1) 행정도시로 인한 인근 도시들의 공동(空洞)화 진행

행정도시와 인근도시들의 도시 질적 수준의 격차에 따른 빨대효과(Straw Effect) 현상 발생 우려

행정도시가 인근 도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의 질이 기대되기 때문에, 인근도시들의 주민들이 행정도시로 이주함에 따른 인근도시의 공동화 우려

인근 도시의 증산증일수록 더 좋은 환경을 찾아 행정도시 이주 가능성은 더욱 높음

행정도시와 인근도시 간의 삶의 질 격차가 높을수록 이주 가능성은 더욱 높음

만약 행정도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주변지역에서 유입될

가능성도 높음

현재 인근도시들의 아파트 분양가와 행정도시의 예정분양가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인근도시들의 거주민들이 행정도시 이주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2) 주변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정도시 발전 잠재력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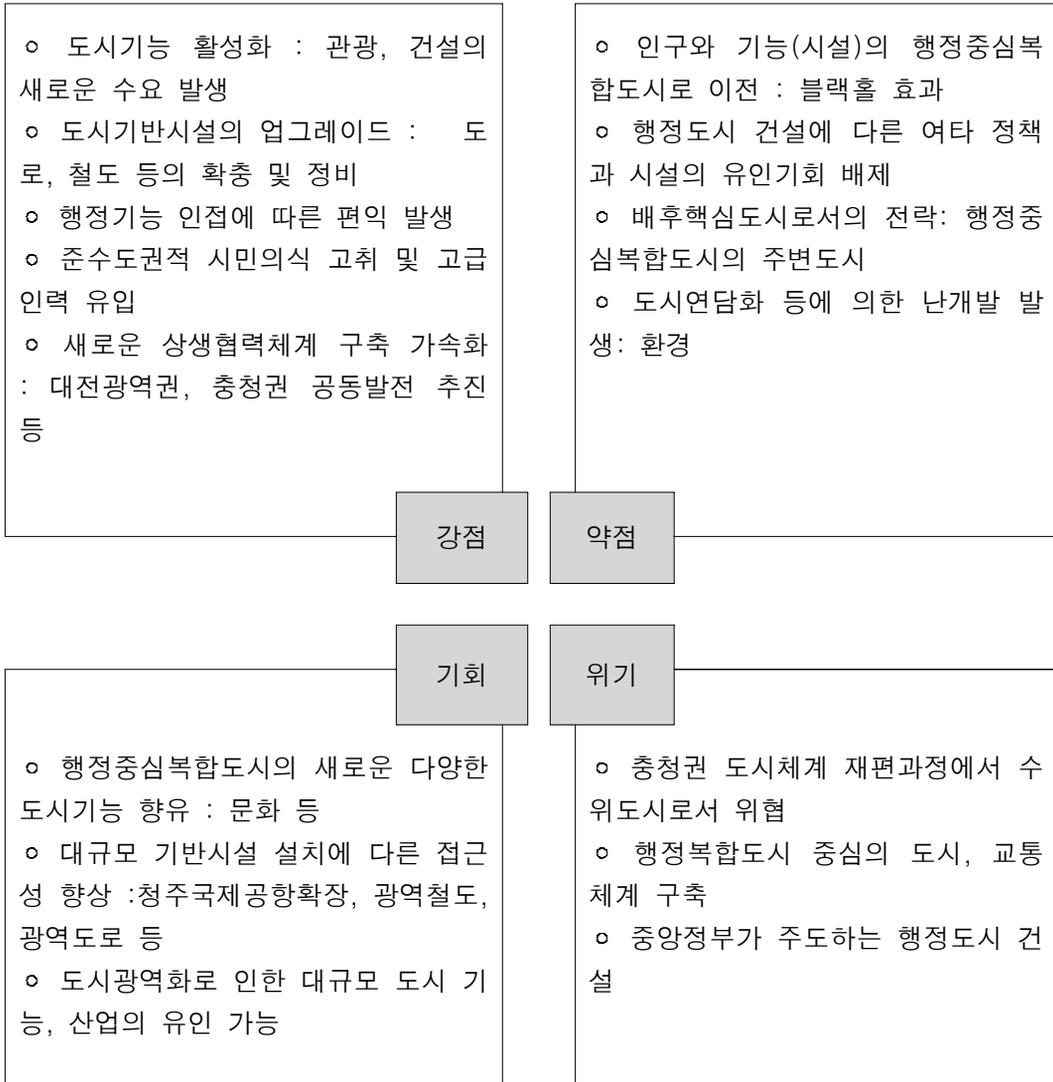
광범위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도시 건설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개발 시너지 효과차단

행정도시는 국제적인 기준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모범도시로 건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은 각종 행위가 제한 규제됨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저해 되고 지역이 낙후될 가능성이 있음

주변지역이 행정도시와 인근 도시들의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행정도시의 발전효과가 인근도시로 확산되지 못하고 고립될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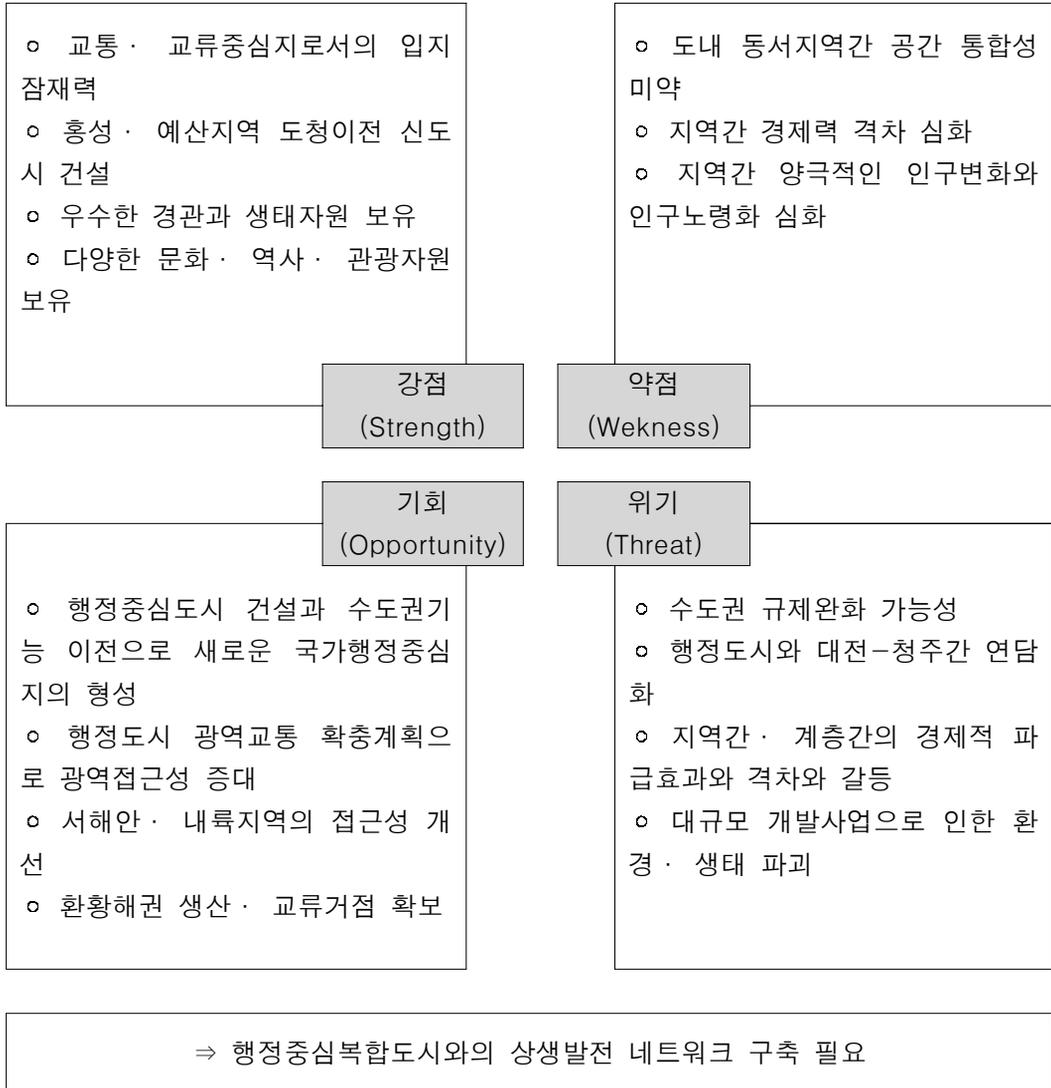
3) 인근 각 시도 및 도시별 행정도시 건설의 SWOT 분석

가. 대전광역시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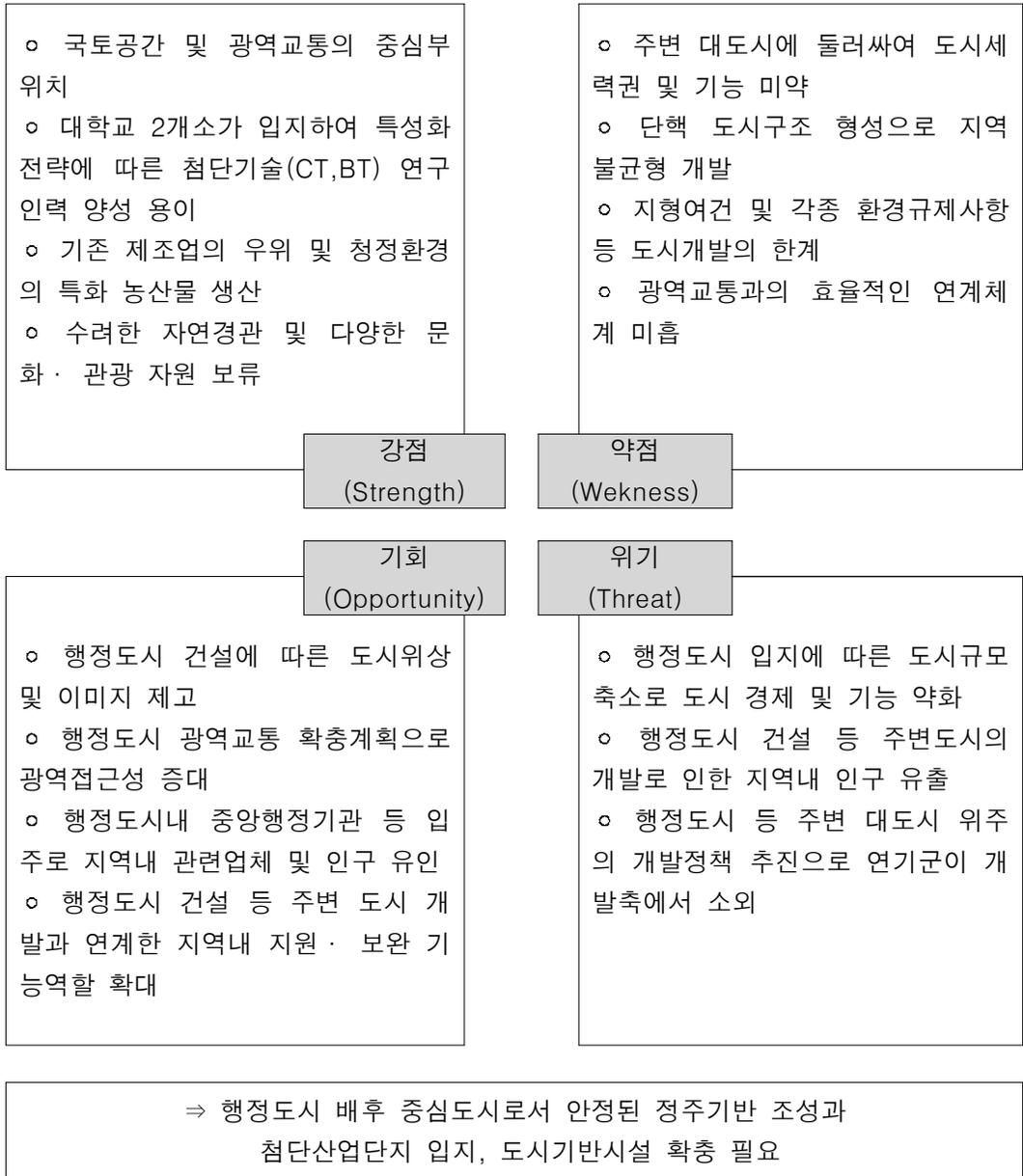


나. 충청남도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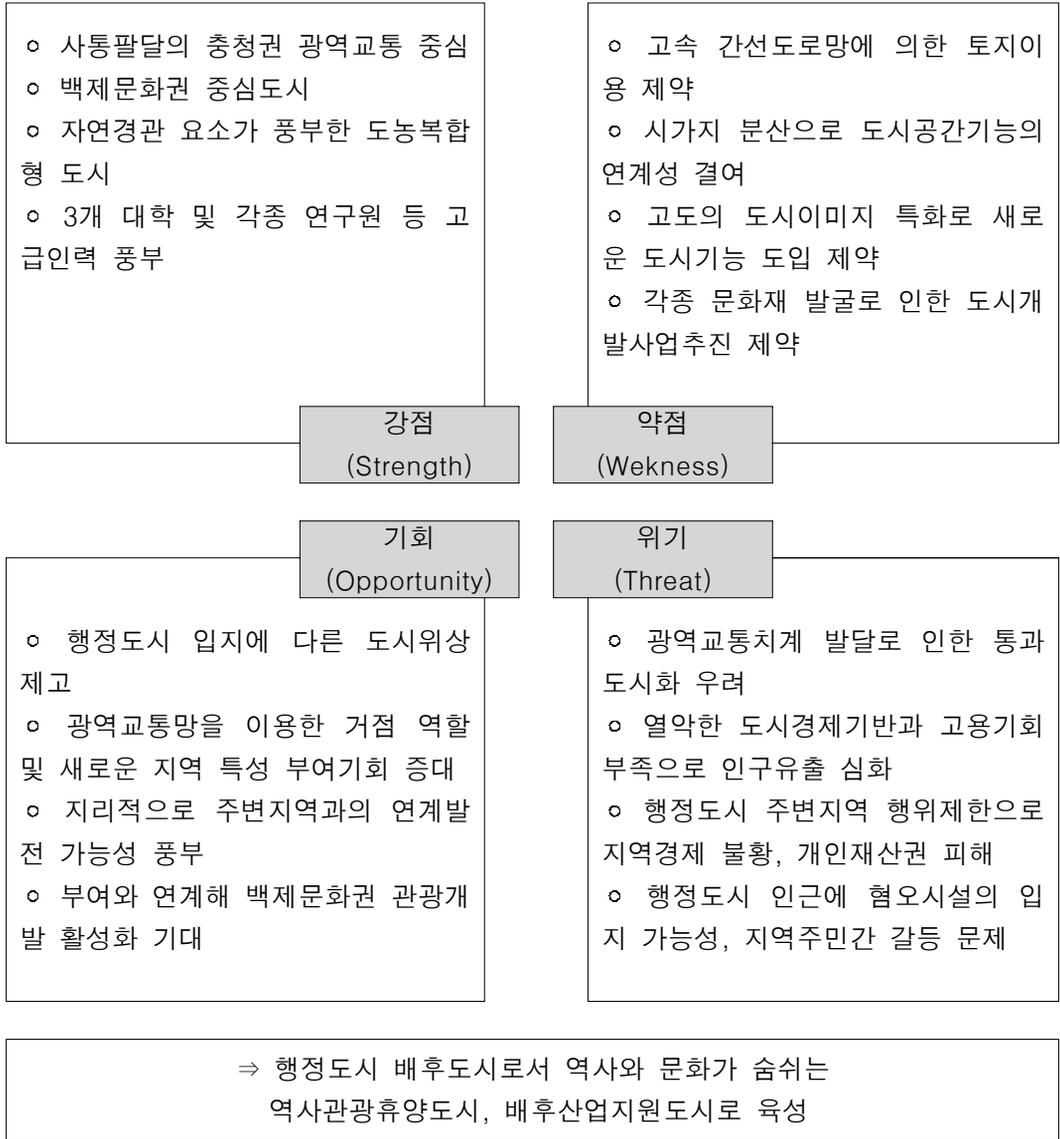
○ 충청남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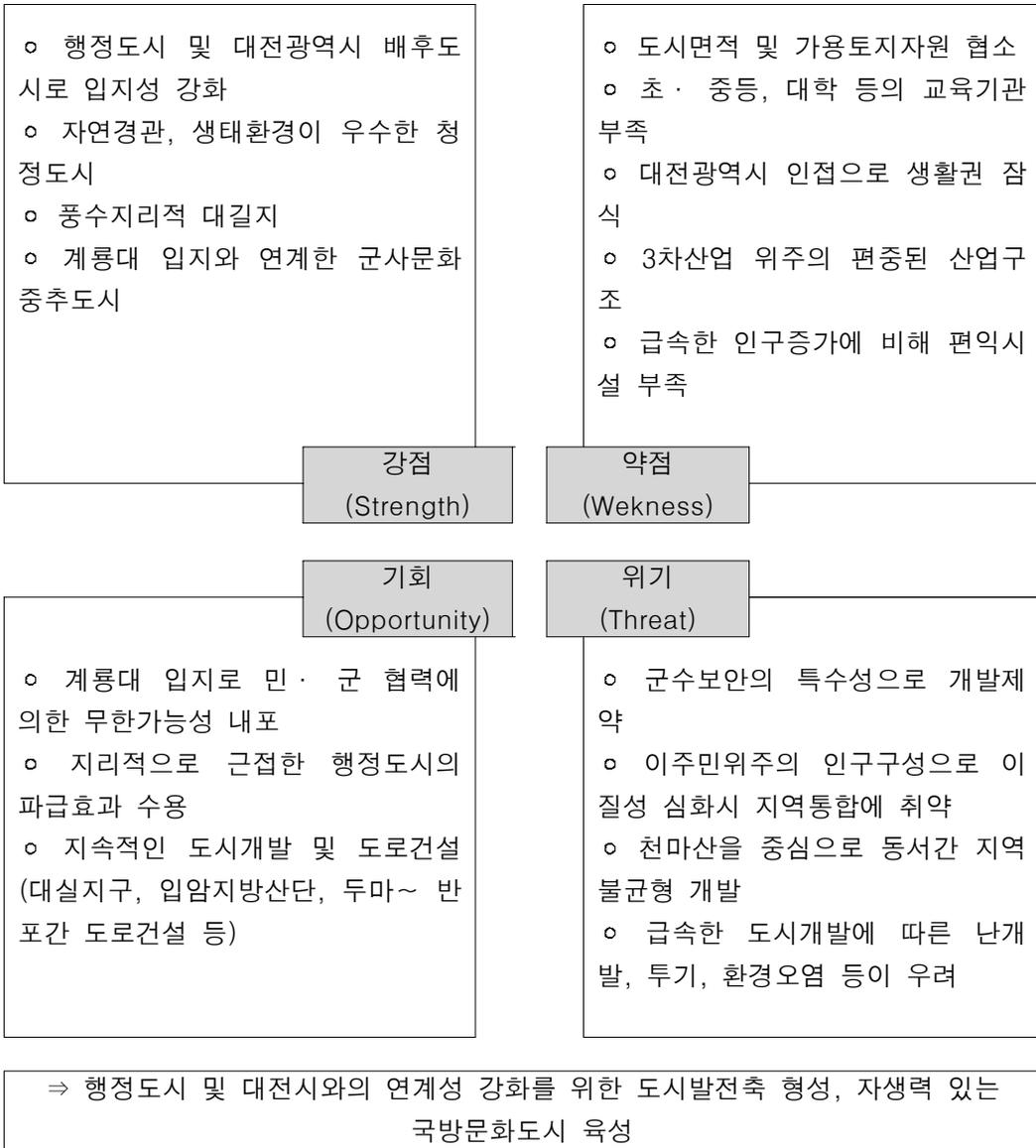
○ 연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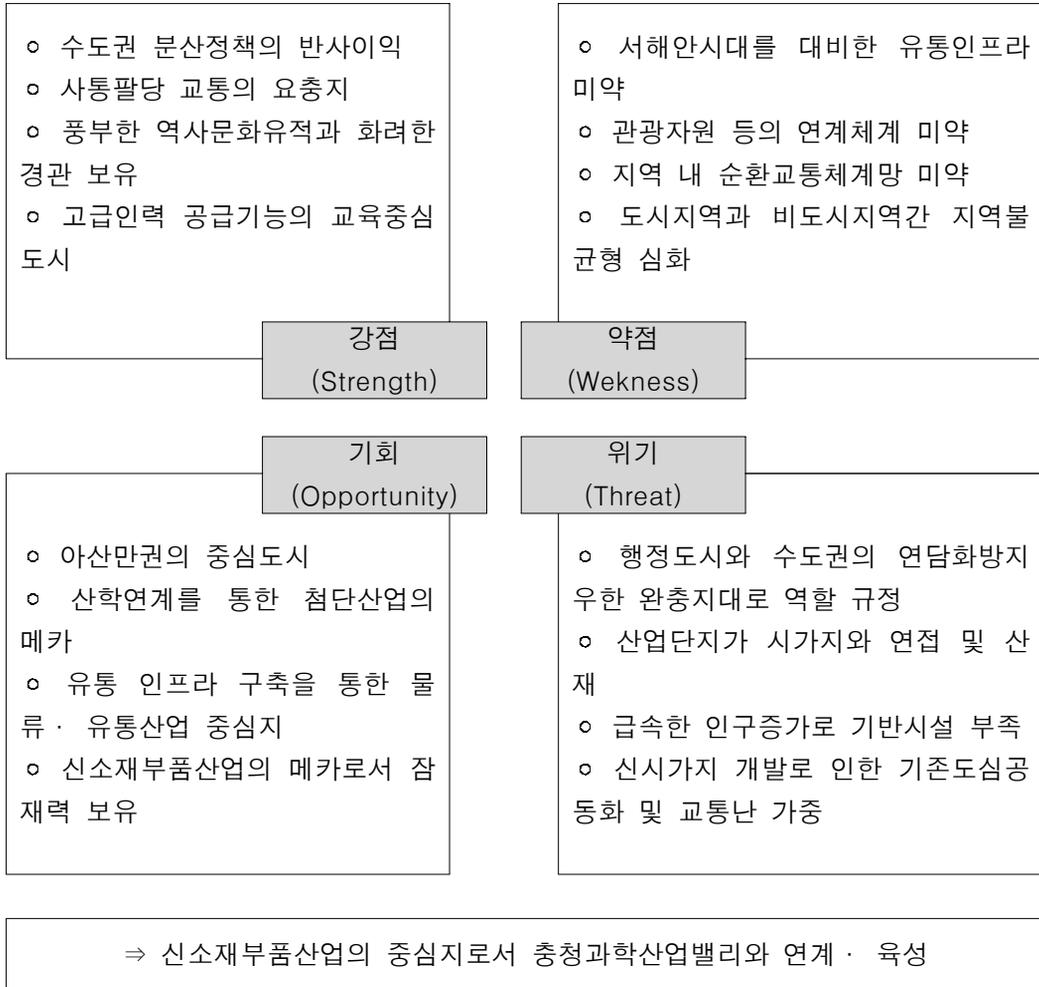
○ 공주시



○ 계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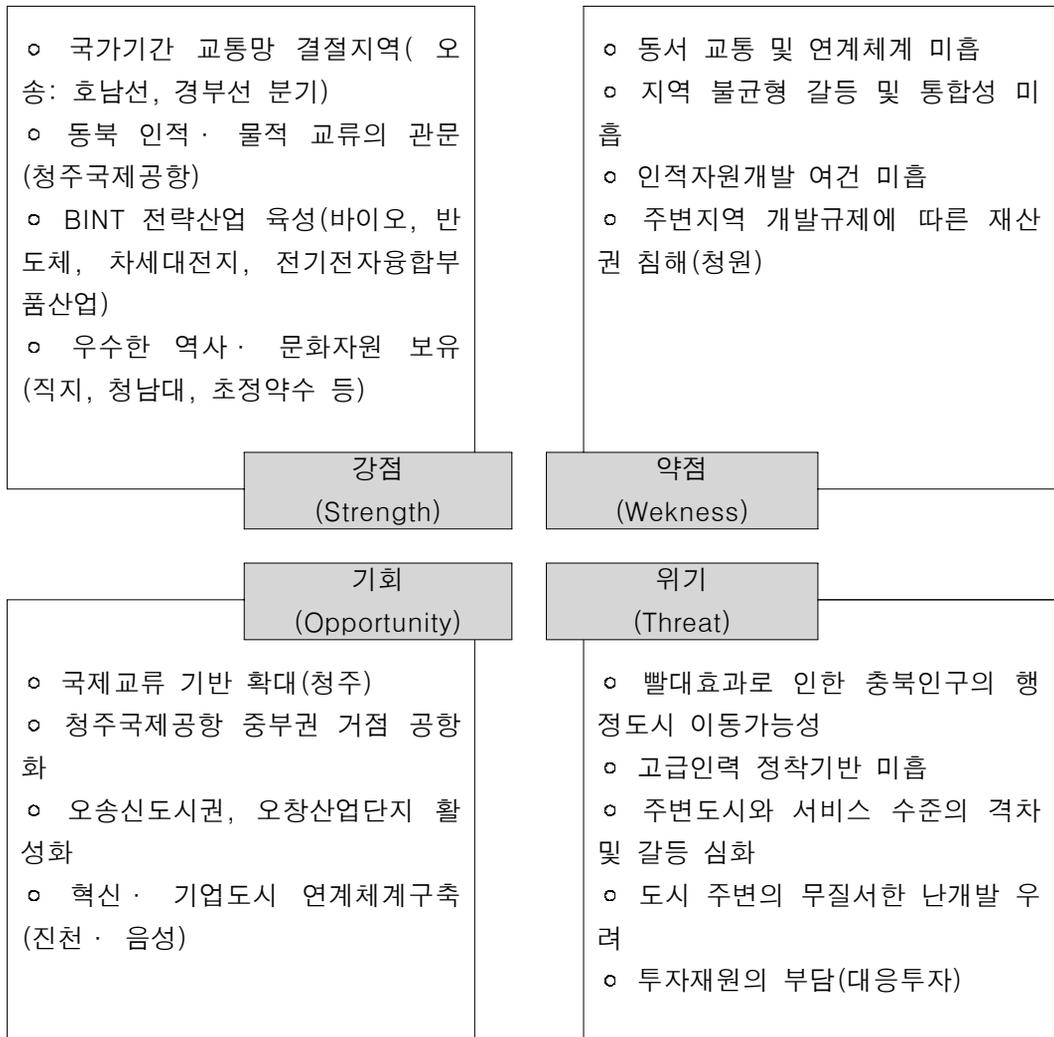


○ 천안· 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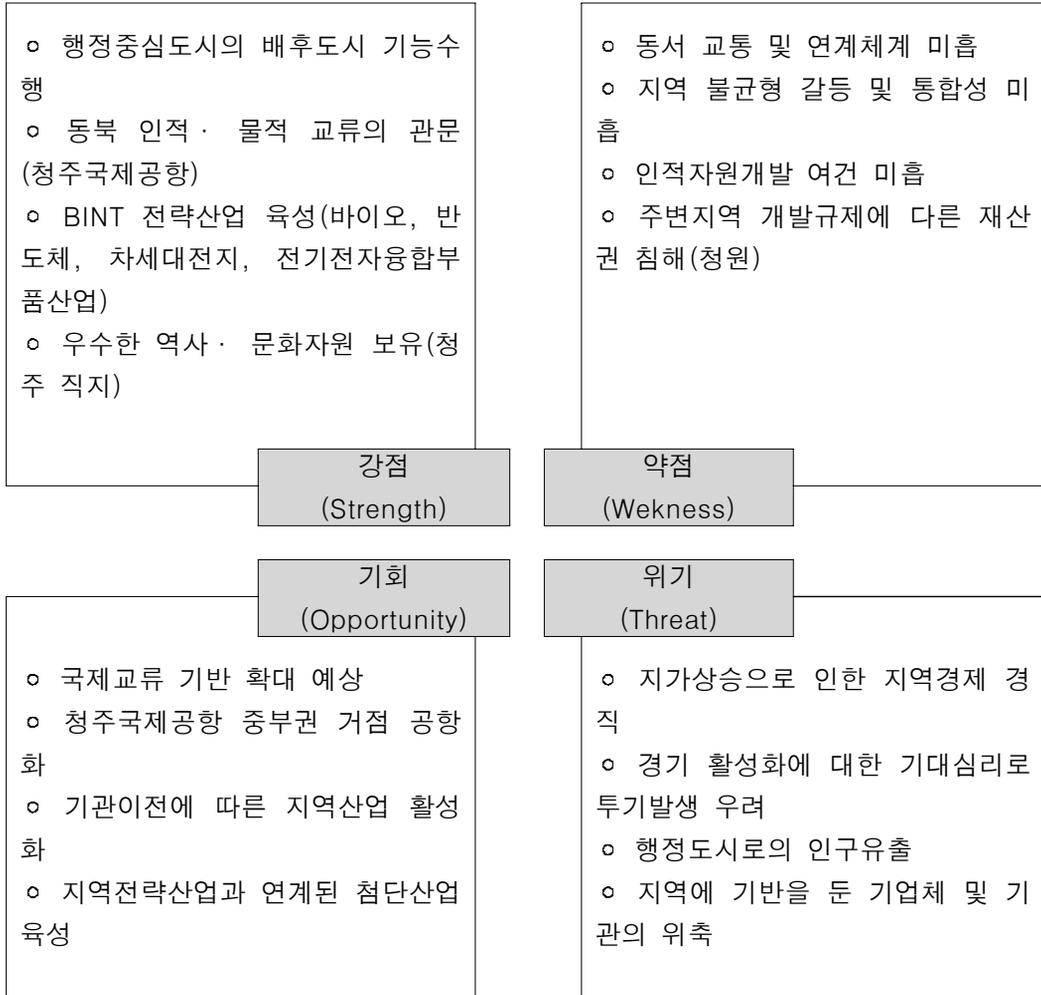


다. 충청북도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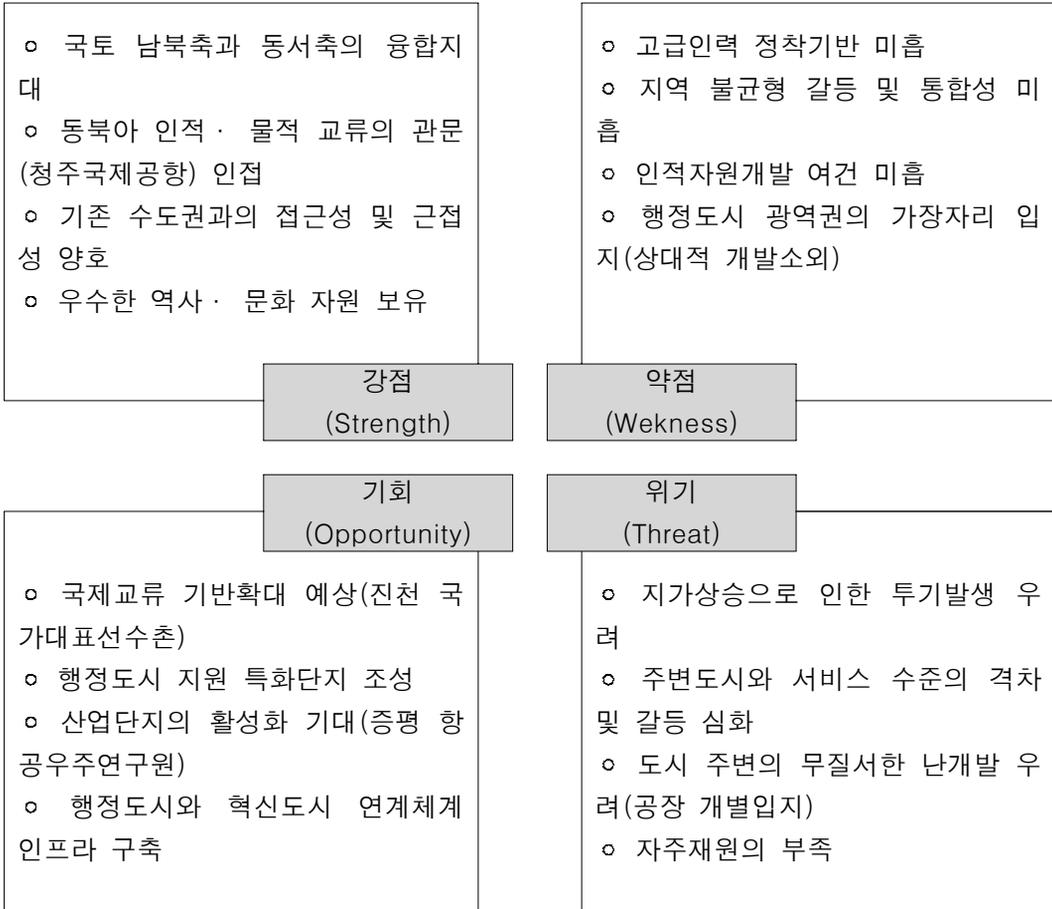
○ 충청북도 전체



○ 청주시 청원군



○ 진천군, 증평군



■ 집 필 자 ■

연구책임 · 행정도시정상추진총청권공동대책위 홍석하 사무처장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기획연구 20010-08 ·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과제

글쓴이 · 홍석하, 성태규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03(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68-7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